최종보고서
(초안)

# 자체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2019. 10.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rocurement

#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Ⅱ. 본론 ····· 4

제1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 5

1.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 6
가. 중앙조달 시 조달청 - 수요기관 간의 구매업무 협의 사례 분석 ····· 8
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의견등록 내용 분석 ····· 29

제2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원인 분석 ····· 52

1. 경쟁제한 행위의 사례와 원인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 ····· 53
가. 인터뷰 내용 ····· 53
나.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 58

2. 경쟁제한 행위의 원인 개관 ····· 59
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경쟁조건 이해 미비 ····· 59
나. 발주기관 담당자와 조달업체 유착 가능성 ····· 59
다.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필요 충족 ····· 59
라. 업무(판단) 기준의 불명확 ····· 59

3. 시사점 : 경쟁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 ····· 61
가.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제공 및 나라장터를 통한 관리 ····· 62
1) 주요 관심 업종에 대해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 62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방안 마련 ····· 63
3) 자체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사전컨설팅 제공 ····· 64
나. 입찰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평가 업무 신설(제3장 상세서술) ····· 66
1)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구축 및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66
2)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 수립 및 운용 ····· 66

4. 해외 사례 ····· 69

제3장 자체발주기관 입찰의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 역할 검토 ··· 77

1. 경쟁제한행위 대응을 위한 조달청 사전검토 업무 수행의 필요성 ····· 78
가. 현행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한계성 ····· 78
나. 경쟁제한 입찰내용 관리에 대한 조달청의 전문성 활용 필요 ····· 80
다. 업계의 자생적 경쟁제한행위 스크린 활동의 제도화 필요 ····· 81

2. 경쟁제한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선별 기준(안) ····· 83
가.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대응을 위한 근거 법제 개선안 ····· 83
1) 제 1 안: 조달사업법 개정안 ····· 83
2) 제 2 안: 전자조달법 개정안 ····· 85
3) 제 3 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안 ····· 86
나.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선별 체크리스트 운용 ····· 88

3. 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 업무를 위한 필요 조직/인력 검토안 ····· 94
가. 조달청 내 조직 신설([가칭] 조달경쟁조사과) 방안 ····· 94
나. 자체조달기관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업무 외부위탁 방안 ····· 99

4. 소결 : 자체발주 입찰 경쟁제한행위 대응 단기/중 · 장기 시행계획(안)····· 102
가. 단기적 대응 방안····· 102
1) 주요 관심 업종에 대해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102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 방안 마련 ·····103
3) 자체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사전컨설팅 제공 ·····104
4)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협회 등과 협업체계 구축 ·····105
나. 중 · 장기적 대응 방안····· 106
1)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및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구축 106
2)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 수립 및 운용 ·····109
3)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내용을 경영평가 반영 ·····110

부 록····· 111

- 경쟁제한행위 유형별 사례집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공공조달계약은 우리나라 법원이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사법계약으로 보고 있으나 입찰 및 계약집행에 있어 규격, 실적, 계약조건 등을 통해 발주부서 우위의 규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 조달청이 중앙조달로 집행하는 입찰은 규격검토 강화, 실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경쟁제한행위를 방지 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자체조달 입찰 건의 경우 조달청의 역할이 입찰·계약 플랫폼(나라장터) 제공으로 한정되어 발주과정에서 포함되는 경쟁제한 요소를 검토·개선하기 어려움

○ 중앙조달기관 및 나라장터 운영기관인 조달청은 공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비합리적인 입찰 및 계약제도 운용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을 시정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자체발주기관을 중심으로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시장 현황 등의 경쟁제한행위 원인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자체발주 입찰의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 역할을 구체적 연구를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연구의 목적

○ 나라장터, 조달정보, 계약 전문인력 등 조달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이 자체 집행하는 입찰에 대한 경쟁제한행위 방지 방안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관련 문헌 조사,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등록 의견 관련 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진행

# Ⅱ. 본론

# 제1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 1.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 2018년 중앙조달 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서, 규격서,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을 입찰공고 전 사전 검토하여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조달청-수요기관 간의 구매업무협의(1,375건)와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업체 의견등록 내용(19,000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16개 유형, 1,042건의 경쟁제한행위를 아래와 같이 식별함

**<2018년 공공발주 경쟁제한행위 사례 분석 현황(총괄)>**

| 구분 | 구매업무협의 검토 자료 | 사전규격공개 | |
|---|---|---|---|
| | | 물품 | 용역 |
| 조사대상 건수 | 1,375건 | 12,000건 | 7,000건 |
| 경쟁제한 선별 건수<br>(전체비중) | 627건<br>(45.6%) | 299건<br>(2.5%) | 116건<br>(1.7%) |

**<2018년 공공발주 경쟁제한행위 유형별 현황>**

| 유형 | 구매업무협의 | 사전규격공개 | | 합계 |
|---|---|---|---|---|
| | | 물품 | 용역 | |
| ▶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약 | 38 | 39 | 22 | 99 |
| ▶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83 | 25 | 25 | 133 |
| ▶ MAS 또는 쇼핑몰 불이용 | 10 | - | - | 10 |
| ▶ 과도한 인증요구 | 10 | 13 | 4 | 27 |
| ▶ 부적정한 지역제한 | 16 | - | - | 16 |
| ▶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 37 | 1 | - | 38 |
| ▶ 수의계약 남용 | 55 | 3 | - | 58 |
| ▶ 과도한 인력요구 | 49 | 13 | 9 | 71 |
| ▶ 특정규격 요구 | 110 | 175 | 33 | 318 |
| ▶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 31 | 3 | 3 | 37 |
| ▶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 8 | - | 1 | 9 |
| ▶ 학력사항표기 | 22 | - | - | 22 |
| ▶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 7 | 1 | - | 8 |
| ▶ 통합발주 | 151 | 12 | 2 | 165 |
| ▶ 부적정한 평가 방식 | - | 14 | 7 | 21 |
| ▶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 - | - | 10 | 10 |
| 합계 | 627 | 299 | 116 | 1042 |

○ 식별된 경쟁제한행위 발주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43%인 45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정부기관 222건(21%), 준정부기관 112건(11%), 교육기관 91건(9%) 등으로 조사됨

**<2018년 공공발주 경쟁제한행위 기관 현황>**

| 기관유형 | 구매업무 협의 | 사전규격공개 | | 합계 (비중) |
|---|---|---|---|---|
| | | 물품 | 용역 | |
| ▶ 정부기관 | 144 | 58 | 20 | 222 (21%) |
| ▶ 준정부기관 | 64 | 31 | 17 | 112 (11%) |
| ▶ 기타공공기관 | 27 | 18 | 7 | 52 (5%) |
| ▶ 공기업 | 24 | 12 | 3 | 39 (4%) |
| ▶ 지방자치단체 | 274 | 132 | 49 | 455 (43%) |
| ▶ 지방공기업 | 13 | 7 | 8 | 28 (3%) |
| ▶ 교육기관 | 52 | 33 | 6 | 91 (9%) |
| ▶ 기타 (유관 재단법인 등) | 29 | 8 | 6 | 43 (4%) |
| 합계 | 627 | 299 | 116 | 1,0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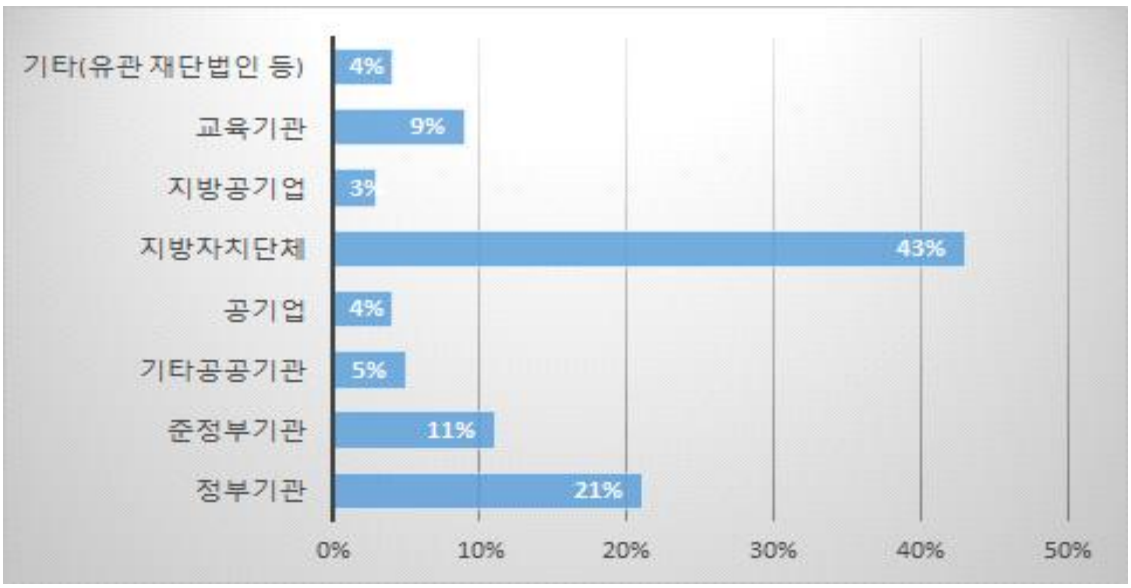

## 가. 중앙조달 시 조달청 - 수요기관 간의 구매업무 협의 사례 분석

○ 조달청에서 입찰공고서, 규격서,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을 입찰공고 전 사전 검토하여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중앙조달 계약 건수(공사, 용역, 물품)는 25,757건이며, 이 중 약 50%는 문서를 통해 수요기관과 구매업무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구매업무 협의 사례를 분석하여 업무 형태별로 유형화 함

· 유형 1)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3.28 |
| 수요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① 정보통신(3572) 또는 정보관리(3573)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②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입찰참가 자격 한함<br><br>-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노후 측정장비 제조•설치”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 등에 따르면 측정 장비를 단수 제조, 설치하는 사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권고일자 | 2018.04.03 |
| 수요 기관 |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시방서 1.5.1 자격<br>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격장 프로그램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에서 참가자격으로 요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격장 프로그램등록”이 위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람 |

| | |
|---|---|
| 권고일자 | 2018.05.21 |
| 수요 기관 | 아시아문화원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br><br>-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생산 증명서 소지 대상 물품(용역) 아니므로 해당내용 삭제 |

| | |
|---|---|
| 권고일자 | 2018.01.15 |
| 수요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p13, 본 입찰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하여야 함<br><br>- 공동계약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공동계약만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검토<br><br>※ 제안요청서 상 ‘각 회선별로 상이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평가기준에 해당내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검토 |

| | |
|---|---|
| 권고일자 | 2018.01.09 |
| 수요 기관 | 서울지방항공청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로 신고한 자<br><br>- 본 용역은 정보통신용역으로서 일반용역에 해당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기술용역이므로 일반용역으로 구매 추진 시 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 제한은 불가함<br><br>※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br>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 |

| | |
|---|---|
| 권고일자 | 2018.04.03 |
| 수요 기관 |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 시방서 1.5.1 자격<br>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격장 프로그램등록증을 보유한 업체<br><b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에서 참가자격으로 요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격장 프로그램등록”이 위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

| | |
|---|---|
| 권고일자 | 2018.01.16 |
| 수요 기관 | 수원시 |
| 조달청 권고 | <입찰참가 자격><br><br>○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6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 된 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를 보유한 업체<br><br>○ 입찰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br><br>○ 또한 구매목적물의 구매와 관련하여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귀 기관이 요청한 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는 없음<br><br>○ 따라서, 경쟁성 확보 및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등 약자기업 입찰참가 확대를 위하여 과업에 대한 필수 자격요건만 참가자격이 되도록 재검토 요망<br><br>○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경기도 내 업체 167개사 중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는 8개사로 과도한 참가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br><br>○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는 해당 과업에 필수 자격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검토<br><br>※ 관련규정<br>-「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유형 2)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1.17 |
| 수요 기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실적><br>- 제안요청서 p.12<br>3. 기 타 (참여기업 납품 실적 조건)<br>1) 입찰 참여기업 CL system의 품질 검증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사항: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납품한 실적 필요 (3건 이상)<br><br>- 납품 실적 요구사항은 입찰참가 제한 사항이며, 입찰참가 제한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품의 경우 제조실적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br>- 납품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제한사항이 아닌 평가항목에 반영 요청<br>- 계약 예규 등에 의거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대학 외 민간의 실적도 인정 요청 |

| | |
|---|---|
| 권고일자 | 2018.07.02 |
| 수요 기관 | 경기도시공사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실적><br>4.입찰참가자격<br>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393,040천원(부가가치포함)이상, 「고감쇠고무 면진받침」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재하도급 실적은 인정불가)<br><br>- 실적제한 시 제한규모는 1/3이 원칙이오니, 실적제한을 하실 경우 제한규모 1/3으로 수정 요청<br><br>- 실적 인정 품목 명칭 수정요청<br>-수요기관 요청:「고감쇠고무 면진받침」<br>-조 달 청 요청: 「교량받침」 |

| | |
|---|---|
| 권고일자 | 2018.01.17 |
| 수요 기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실적><br>ㅇ수행실적 인정범위<br>- 관세행정 정보화 관련 해외사업(BPR/ISP, 시스템 구축) : 100%<br>- 기타 전자정부 관련 해외사업(BPR/ISP, 시스템 구축) : 70%<br>- AEO인증, FTA컨설팅 등 관세행정 관련 컨설팅(가격심사 등 조사·심사분야 컨설팅 제외) : 50%<br>*** 수행실적 관련 자료는 사전에 관세청에 제출하여 확인 필요**<br><br>- 납품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제한사항이 아닌 평가항목에 반영 요청<br>- 계약 예규 등에 의거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대학 외 민간의 실적도 인정 요청<br>-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14] 평가기준** 적용 권고 |

| | |
|---|---|
| 권고일자 | 2018.10.16 |
| 수요 기관 |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실적><br>(제안요청서 p33)<br>*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br><br>-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2018.7.1.)으로 수행실적 평가시 차업기업에 대하여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br><br>-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으로 수정 |

| | |
|---|---|
| 권고일자 | 2018.10.29 |
| 수요 기관 | 경기도 소방학교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실적><br>○ 정량평가 항목<br>- 최근 3년간 소방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br><br>-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3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평가가 가능함<br>→ 실적평가 삭제 또는 실적평가가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제시 요청<br><br>- 수행실적 평가 시 개정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참조하여 평가기준 수정 요청 |

| | |
|---|---|
| 권고일자 | 2018.01.09 |
| 수요 기관 | 정부정보자원관리원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실적><br>21. 수행실적 평가기준 (6점)<br>*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875호, 2017.6.1. 시행) 제9조제7항제3호 별표14 준용<br>가.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br>1) 동급이상 사업 : 정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내 입주된 포털·홈페이지·행정업무시스템 등 AP 관련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행 완료된 사업 또는 계약 종기일이 2017년 12월말까지로서 이행 완료 예정인 사업(HW 또는 인프라 관련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 제외, SW·AP 구축 사업 제외)<br>2) 유사사업 : 정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내 입주된 포털·홈페이지·행정업무시스템 AP 구축 관련 사업으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행 완료된 사업 또는 계약 종기일이 2017년 12월말까지로서 이행 완료 예정인 사업(HW 또는 인프라 관련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 제외)<br><br>- 수행실적을 정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내 실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

· 유형 3) MAS 또는 쇼핑몰 불이용

<MAS 또는 종합쇼핑몰 불이용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4.05 |
| 수요 기관 | 안양시 |
| 조달청 권고 | 스토리지, 운영단말 등은 우리 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 등재되어 있으므로 수요물품의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 확인 요청<br>→ 종합쇼핑몰 등재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2호 나목에 따라 종합쇼핑몰 등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함 |

| | |
|---|---|
| 권고일자 | 2018.04.02 |
| 수요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 조달청 권고 | ‘남양주 별내지구 중앙119구조대 헬기장 이전공사 보강토옹벽 구매’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2호 가목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계약된 물품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 |

| | |
|---|---|
| 권고일자 | 2018.02.28 |
| 수요 기관 | 강원도 원주시 |
| 조달청 권고 | 스위치 등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은 종합쇼핑몰로 구매 요청<br>*「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2호에 따라 종합쇼핑몰 구매하여야 함. |

· 유형 4) 부당한 인증 요구

<불필요한 인증 요구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4.10 |
| 수요 기관 | 인천항만공사 |
| 조달청 권고 | <요구 인증><br>○ (제안요청서 p37)<br>~국내용/국제용 CC인증을 필히 득해야 하며~<br><br>-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내용 CC 인증과 국제용 CC인증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수정 요청 |

| | |
|---|---|
| 권고일자 | 2018.06.28 |
| 수요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조달청 권고 | <요구 인증><br>-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인증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br>한국산업표준 KS C7603 형광등기구<br>한국산업표준 KS 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br>한국산업표준 KS C7657 LED센서 등기구<br><br>- 조달요청물품과 관련된 KS인증서의 종류•등급•호칭을 검토 후 명기 |

| | |
|---|---|
| 권고일자 | 2018.05.23. |
| 수요 기관 | 예산군 |
| 조달청 권고 | <요구 인증><br>사후관리조직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서에 대한 배점<br><br>- 해당 인증서 보유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은 입찰자격 이중제한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평가항목의 수정 또는 삭제 |

· 유형 5) 부적정한 지역제한

<부적정한 지역제한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4.28 |
| 수요 기관 | 신안군 |
| 조달청 권고 | 지역제한을 할 경우 펌프 제조업체수가 8개 업체로 한정되므로 지역제한 재검토 요청 |

| | |
|---|---|
| 권고일자 | 2018.02.26 |
| 수요 기관 | 목포시 |
| 조달청 권고 | 협상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진하는 계약방법으로, 전문성·기술성 등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등의 제한은 협상계약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

| | |
|---|---|
| 권고일자 | 2018.02.05 |
| 수요 기관 | 경인지방병무청 |
| 조달청 권고 | <지역제한><br>6. 라. 45인승 차량 보유 대수 19대 ~ 1개 권역만 입찰할 수 있다 (공동계약 불가)<br><br>'1개 권역만 입찰할 수 있다' 삭제 |

· 유형 6)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긴급입찰 남용)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4.10 |
| 수요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조달청 권고 | □ 귀 기관이 기재한 긴급입찰사유 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령 관련규정(제35조)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입찰을 긴급입찰로 집행하기 곤란합니다.<br>○ 귀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의 달성을 위한 컨설팅 결과 도출을 위해 긴급입찰의 필요성을 기재<br>○ 그러나, 긴급입찰 집행의 결정은 긴급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여부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br>- 동 사유가 상기 법령상 근거와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br>○ 귀 기관 긴급입찰사유서 기재내용 만으로는 다른 국가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조정의 불가피성, 긴급한 (국가적)행사 등을 위한 필요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br>- 이에 따라, 일반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br>□ 다만, 귀 기관에서 긴급입찰사유에 누락시킨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작성하여 송부해 주기 바라며,<br>○ 만약, 추가 기재(또는 재작성)후 송부할 경우, 긴급입찰 여부는 관련 규정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 |

| | |
|---|---|
| 권고일자 | 2018.06.20 |
| 수요 기관 | 화순군 |
| 조달청 권고 | - 동일한 인공골재에 대하여 규격만 다른 2종을 구매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사유서',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연관성 대비표', '특허 등 수의계약 추진시 체크리스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제출<br>- 대체대용품 유무를 확인한 '수의계약사유서'에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br>- '검토결과보고서'는 내부결재 등 공문 또는 날인한 보고서를 사본으로 제출 |

| | |
|---|---|
| 권고일자 | 2018.05.31 |
| 수요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조달청 권고 | □ 귀 기관이 기재한 긴급입찰사유 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령 관련규정(제35조)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입찰을 긴급입찰로 집행하기 곤란함<br>○ 귀 기관에서는, '15년부터 지원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도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단기간 내 폐업 증가 비율이 급증하자,<br>- 이 해소방안 중 하나로 청년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홍보'의 필요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청<br>○ 그러나, 긴급입찰 집행의 결정은 긴급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여부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br>- 동 사유가 상기 법령상 근거와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br>○ 귀 기관 긴급입찰사유서 내용만으로는 상기 규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입찰로 집행할 예정<br>□ 다만, 귀 기관에서 긴급입찰사유에 누락시킨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작성하여 송부해 주기 바라며,<br>○ 만약, 추가 기재(또는 재작성)후 송부할 경우, 긴급입찰 여부는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 |

· 유형 7) 수의계약 남용

<수의계약 남용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1.19 |
| 수요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조달청 권고 | ▶특허등록제품(제10-1209695호)으로 수의계약 요청하였으나, 그간 감사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제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종제품 간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br><br>▶유사제품 등을 포함하여 대체•대용품의 유무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이 제품이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대용품 유무 검토의견을 재회신 |

| | |
|---|---|
| 권고일자 | 2018.02.28 |
| 수요 기관 | 강원도 원주시 |
| 조달청 권고 | <수의계약 사유><br>사유 : 장애발생 시 네트워크 중단으로 대내.외 행정서비스 전면 중단되는 등 파급성이 큰 사업, 예산의 조기접행이 필요한 사업<br>▶붙임의 긴급입찰사유서 서식을 참조하여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공고기간이 단축되어야 하는 사유)를 지방계약법상의 긴급입찰사유에 맞게 정확하게 명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br>▶긴급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가격 10억 미만 시 공고기간 : 20일 이상임. |

| | |
|---|---|
| 권고일자 | 2018.02.02 |
| 수요 기관 | 병무청 |
| 조달청 권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또한 해당 수의계약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기 조달된 제품과 호환성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재검토 요청 |

| | |
|---|---|
| 권고일자 | 2018.02.28 |
| 수요 기관 | 강원도 원주시 |
| 조달청 권고 | <수의계약 사유><br>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사목에 의건 특허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br>적절한 대체대용품 유무 및 본 특허 제품이 아니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검토 |

· 유형 8) 과도한 인력요구

<과도한 인력 요구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1.09 |
| 수요 기관 | 산림청 |
| 조달청 권고 | <요구 인력기준><br>○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총괄(PM)은 공공기관 관련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응용프로그램 운영인력 중 최소 3명 이상은 공공기관 개발 또는 유지관리 프로젝트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총괄(PM)은 “가급적” 공공기관 관련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응용프로그램 운영인력 중 최소 3명 이상은 “가급적”공공기관 개발 또는 유지관리 프로젝트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추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가급적” 문구 삽입 |

| | |
|---|---|
| 권고일자 | 2018.01.12 |
| 수요 기관 | 병무청 |
| 조달청 권고 | <요구 인력기준><br>○핵심인력 대상<br>· 사업 수행책임자(PM) : 1명<br>~~※ 공공분야 및 본사업과 유사분야(HW, SW를 제외한 순수개발용역) 해당 경력자로서 5억 이상 프로젝트 수행 경력~~<br>· 사업 수행관리자(PL) : 3명 (분석·개발 2명, DB전문가 1명)<br>▶경력자 요구사항은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입찰경쟁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좌측 취소선 문구 삭제**하거나 아래와 같이 정정 요청<br>**→경력자 전문인력 요구사항은 가급적 권장사항이며,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되, 추후 협상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 | |
|---|---|
| 권고일자 | 2018.01.15 |
| 수요 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 조달청 권고 | <요구 인력기준><br>○**투입인력의 조건**<br>-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지분율 최대 업체) 소속이어야 한다.<br>- PM은 공공분야 및 본사업과 유사분야 해당 경력자로서, 사업수행 경력 10년 이상인 원수급자의 정규직으로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br>- 프로젝트에 투입된 PL급 이상은 중급이상으로 유사사례 사업 경험이 있는 정규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br>▶ 사업관리자(PM)로 변경<br>▶ 경력자 요구사항은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입찰경쟁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좌측 밑줄 문구를 삭제** 또는 **아래와 같이 정정 요청**<br>→ 경력자 전문인력 요구사항은 가급적 권장사항이며,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되, 추후 협상시 제안요청서 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 유형 9) 특정규격 요구

<특정규격 요구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10.10 |
| 수요 기관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광주캠퍼스 |
| 조달청 권고 | - 귀 사양서 상의 공압연결 커넥터의 사양(PISCO)은 특정업체 규격으로 사료되오니 재검토<br>- 경쟁 입찰에서 특정업체의 제품(특정업체 규격)으로 납품토록 하는 것은 계약예규에 위배되므로 특정규격일 경우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규격서를 작성 |

| | |
|---|---|
| 권고일자 | 2018.02.19 |
| 수요 기관 | 동물보호센터 |
| 조달청 권고 | <수요기관 요청 규격><br>○ 물품규격서 > 소동물 내시경 시스템 :<br>-원산지 : Germany<br>-B.규격 > 수의과학 검역원에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허가)받은 제품으로 표준부속품 내역에 있는 품목과 동일하게 구성 되어야 한다.<br><br>○ 물품규격서 > 초음파영상진단시스템 :<br>-원산지 : U.S.A<br><br>-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시 입찰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특정규격(조달우수제품, 특허, 실용신안,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은 금지사항에 해당함<br><br>- 규격서 및 내역서 상에 명시된 규격의 특정규격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규격에 해당할 경우 공통(일반)규격으로 재검토 바람 |

· 유형 10)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1.19 |
| 수요 기관 | 강원대학교 |
| 조달청 권고 | <공동계약조건><br>0.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로 구성 (3개사 이내, 최소 참여 비율 10%이상)<br>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5인 이하 10%이상으로 구성 권고 |

| | |
|---|---|
| 권고일자 | 2018.01.22 |
| 수요 기관 | 국무조정실 |
| 조달청 권고 | <공동계약조건><br>❍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관사업자의 수행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br>▶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수 재검토<br>-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br>→ 작성 예시)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
|---|---|
| 권고일자 | 2018.02.05 |
| 수요 기관 | 공주시 |
| 조달청 권고 | <공동계약조건><br>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 분담이행 불허)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한다.<br>▶ 구성원수 재검토 :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할 경우 해당 사유 명시 요청<br>* 공동계약표준예시)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권고일자 | 2018.02.08 |
| 수요 기관 | 강릉원주대 정보전산원 |
| 조달청 권고 | <공동계약조건><br>□ 참가자격<br>◦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가<br>▶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및 구성조건 명시 바랍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을 허용해야 하며, 불허 시 제안요청서상에 사유를 명시)<br>- 공동계약 허용시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
|---|---|
| 권고일자 | 2018.02.08 |
| 수요 기관 | 강릉원주대 정보전산원 |
| 조달청 권고 | <공동계약조건><br>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주관사는 동일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br>▶'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재검토<br>-「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br>* **구성원수 :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경우 해당 사유 명시**<br>예시)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유형 11)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10.25 |
| 수요 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 조달청 권고 | ▶ 규격가격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나 현 요청 건은 규격이 비교적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사유도 미비하며, 납품가능한 업체가 다수 있는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법 변경 검토 |

| | |
|---|---|
| 권고일자 | 2018.05.05 |
| 수요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 조달청 권고 | • 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니, 계약방법 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br>• 지명경쟁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 사유·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 현황 자료 및 등록업체 사업자 등록 번호등 명시 |

· 유형 12) 학력사항 표기

<학력사항 표기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5.05 |
| 수요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 조달청 권고 | □ [별지서식6,7,18] 학력사항 표기를 재검토하여 주십시오.<br>○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이 학력 철폐에 역주행하면서, 관행적으로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불필요한 학력기재 요구사항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시행<br>* 과업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학력사항인 경우 사유서를 송부하여 주시고, 이외의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형 13)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사례>

| | |
|---|---|
| 권고일자 | 2018.03.12 |
| 수요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조달청 권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할 때 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로만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자의 전문성을 평가(PM의 수업수행 경력)하는 항목은 삭제 검토 바랍니다. |

| | |
|---|---|
| 권고일자 | 2018.03.23 |
| 수요 기관 | 인천항만공사 |
| 조달청 권고 | <제안평가기준><br>○ 정량평가<br>- 실적평가<br>: 단일용역 건당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함<br><br>•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4]에 따름<br>① 단일용역 건당 평가가 아님 → 관련 실적의 누계에 대한 평가임<br>② 유사용역 평가 아님 → 동등 이상 용역의 평가임 |

| | |
|---|---|
| 권고일자 | 2018.05.04 |
| 수요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조달청 권고 | <제안평가기준><br>○ 정량평가<br>- 신인도<br>만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br>(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여업정지 처분 등 제제를 받지 않은 업체)<br>2.8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br>(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여업정지 처분 등 제제를 받거나,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br>주석 : 부정당 제재 위반여부 확인<br><br>•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처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처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br><br>• 부정당제재 유무만 평가할 것인지, 부정당제재 유무,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영업정지 처분 유무만 평가를 할 것인지 기타 타 상황까지도 평가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br><br>• (부정당제재 유무 이외까지 평가를 할 경우) '~ 등'의 표현은 불확정 개념이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의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수정 요청 |

· 유형 14) 통합발주

| | |
|---|---|
| 권고일자 | |
| 수요 기관 | |
| 조달청 권고 | -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건의 경우 분리발주가 원칙이오니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br>- 분리발주가 불가할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일괄발주 5개 항목 검토 및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이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제출<br>(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공고에 사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반영하고 사후 정산처리 됨)<br>- 만약, 본 건이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물품설치 건이면 일괄발주가 가능하오니 관련 공사법령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

## 나.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의견등록 내용 분석

○ 2018년 기준 사전규격공개 등록 건수는 123,270건이며, 이 중 의견등록 건수는 12,055건

○ 사전규격공개에 대해 등록된 의견을 각각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나누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함

· 유형 1)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4.27. |
| 발주처 | 수원시청 |
| 업체 의견 | · 입찰 설치자 자격이 본 사업 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로 다수의 입찰 참가 불가능<br>→ ISO9001, ISO14001 삭제 요청<br>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이면서 전광판 직접생산증명서를 갖춘 업체이면 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발주처 답변 | · 의견주신 입찰참가자격 중 ISO인증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9.28. |
| 발주처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
| 업체 의견 | ·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디오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영상물 제작을 위한 직접생산증명원,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등이 필수이고, 필요에 따라 조달청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9999) 또는 영화제작업(업종코드1236)으로 등록한 자를 간혹 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의 입찰에서 참가자격은 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로 되어 있어, 본 과업이 홍보영상 제작인지 그 밖의 매체대행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궁금함과 의문이 듭니다.<br>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매체 및 기타 홍보용역은 없고 홍보동영상 제작만 있던데.. 그렇다면 참가자격 요건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 제작이 주 과업인데 광고대행업 등록된 자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과업범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참가자격에 왜 광고대행업을 넣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의견주신바대로 수요부서와 과업내용 검토 결과 제안서에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2.07 |
| 발주처 | 해양수산부 |
| 업체 의견 | · 공개규격 -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br>건의사유 - 제시된 공개규격에는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으로 볼 때 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자격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무인도서 관리는 해양의 특성을 많이 반영해야 하므로 해도제작 능력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도제작업을 보유한 업체에게도 참가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보유업체도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안요청서에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 할 계획임 |

| | |
|---|---|
| 등록 일자 | 2018.02.28 |
| 발주처 | 울산광역시 |
| 업체 의견 | · 건의사유<br>- 서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학술연구용역 코드만 가지면 일반 업체도 입찰 가능하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br>비영리단체, 기관에 해당하는 입찰 제한 조건이 완화될 수 있는지 건의 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br>학술연구용역 코드만 가지면 입찰 가능하도록 입찰참가 제한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4.13 |
| 발주처 | 해양수산부 |
| 업체 의견 | · 1. 과업의 내용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니,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학술연구기관이 대표사가 된다를 넣는 것이 결과를 더욱 효과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지요?<br>2. 해양관련 수행실적이 너무 다양하니 크루즈, 요트, 마리나 등 구체화하고, 논문이나 도서출판도 포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 건의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r>1번 건의 : 수용 - 학술연구기관이 대표가 되도록 함<br>2번 건의 : 일부 수용 - 해양관련실적은 해양관광관련실적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나, 논문 또는 출판까지 실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실적의 간접적인 증빙은 될 수 있어도 직접 실적이라 보기 어려워 수용 불가 |

| | |
|---|---|
| 등록 일자 | 2018.05.04 |
| 발주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업체 의견 | · 1. 입찰공고문 ▷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SMS LMS 통신회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 에서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문자서비스에는 SMS, LMS 및 알림톡을 포함하고 있으며, 3개 이동통신사업자에는 알림톡을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에 KT, SKT, LTU+ 3개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인 기간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MVNO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카카오톡과 총판 계약이 되어 있는 세종텔레콤도 통신사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 본 의견사항 수용<br>- (변경후) 입찰공고일 현재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및 기간통신사업자(세종텔레콤)와 통신회선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업체 |

| | |
|---|---|
| 등록 일자 | 2018.07.24 |
| 발주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
| 업체 의견 | · 본 용역은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신권고안에 따라 기존 해체계획서 및 업무이행사항의 보완 및 지침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와 최근 5년 이내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해제 용역 수행경험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하여 당연한 업무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여 연구 및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력산업계 업체들 보다 높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해체산업에서 관련 업체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1.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업무대행업으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회 요청 의견에 대한 답변<br>- 연구로 부지 규제 해제 업무 시 수반되는 잔류 건물 및 토양 폐기물 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의 제1호(방사선오염의 제거), 제2호(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와 관련성이 높은 바 입찰자격요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br>2. 최근 5년 이내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해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삭제<br>- 해체분야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본 요건은 철회함 |

| | |
|---|---|
| 등록 일자 | 2018.08.03 |
| 발주처 | 인천항만공사 |
| 업체 의견 | · 상주 건설사업기술자 투입 중 중급 1인 전문분야 토질. 지질에 대하여 토질. 지질 또는 항만. 해안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모든 상주기술자가 직무분야 토목 전문분야 항만. 해안으로 등록하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 변경 내용 : 중급 기술자의 전문분야 토질, 지질을 항만, 해안 또는 토질, 지질 또는 도로, 공항으로 확대<br>- 변경 사유 : 자격요건 완화 통한 참여기회 확대 |

| | |
|---|---|
| 등록 일자 | 2018.10.05 |
| 발주처 | 문화재청 |
| 업체 의견 | · 실측이나 보수도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실측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br>보수기술자중에서도 특급기술자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 검토 결과 비상주감리원 자격 요건을 실측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보수 분야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1.16 |
| 발주처 | 전라남도 광양시 |
| 업체 의견 | ·입찰참가자격 [사]항 일부충족 또는 전부충족인지?<br>내용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 참여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br>2억 이상은 전국입찰이라고 광양시에서 그러시던데. |
| 발주처 답변 | · 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업체가 자격조건의 일부만 충족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모든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을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업체 각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으로 변경. |

· 유형 2)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5.03. |
| 발주처 | 논산시 행복도시국 맑은물과 |
| 업체 의견 | · 구매 및 공사시방서를 살펴본바 이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정상가동실적 하수슬러지 건조배기가스 처리용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바 과도한 제한으로 사료 됩니다.<br>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면허보유 및 직접생산업체라면 누구든 제작, 설치 가능한 중기간경쟁제품으로 경쟁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실적을 배재하시던지 완화조치 요청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본 설비는 하수슬러지 건조기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및 다량의 점착성(PAC, Alum, Polymer 등 응집제의 영향) 먼지와 수분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적정 세정수량으로 탈습기능 및 열수지(온도조건)를 만족해야 하며, 악취제거에도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시설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br>- 다만, 세부적인 기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업체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도한 실적제한은 배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9.05. |
| 발주처 | 청주시청 |
| 업체 의견 | · 귀청에서 제시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은 특정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입찰입니다. 귀청에서 제시한 참가 자격에 2회 이상 시설 공사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매립식으로 한 실적만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경쟁 입찰에 자격이 되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겠는지요?<br>정당한 경쟁 입찰 방식이라면 국제 경기장 규격의 시공 경험과 시공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 봅니다. 또한 공동도급 조건도 참가 자격으로 검토 요청 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귀사(하) 의견을 검토 한 결과, 『동결설비 특기 시방서』의 「1-2(공사입찰자 조건)」에서 “마. 아이스링크장 및 빙상장 등의 시공 경험이 2회 이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를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3.27 |
| 발주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업체 의견 | · 40페이지의 사전규격의 정량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주사업자로 관련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수행 건수만을 배점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br>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정부기관 및 연구원에서도 극히 일부 기관의 수행 실적으로, 이 조항을 준용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만이 참여 가능함으로써 열정 있는 일반 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br>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소 평가 조항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의견내용을 수렴하고 민간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을 최근 3년간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으로 변경하여 일부기관에 국한되지 않도록 수행실적 평가요소를 변경처리 하였습니다.<br>- 수행실적 평가대상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875호)」제9조 제7항 준용 |

| | |
|---|---|
| 등록 일자 | 2018.05.11 |
| 발주처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 업체 의견 | ·[사업실적 기준]<br>- 제안요청서상 사업실적 평가 시 70개 이상의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가상화 구축 사업만 사업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br>[요청내용]<br>위와 같은 실적은 특정 몇 개의 업체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업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서버가상화 구축사업 실적으로 실적인정기준을 확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참여 업체 확대를 위해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정<br>-해당사업의 범위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보화 구축 사업(서버가상화 구축 사업)으로 해당사업 금액 대비 단일금액 3억원(부가세포함)이상 수행한 실적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기준 수정 |

| | |
|---|---|
| 등록 일자 | 2018.01.15 |
| 발주처 | 해양수산부 |
| 업체 의견 | ○ 능력 있는 중소 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실적 제한이 과도함.<br>(1억원 이상 국제행사 7건 이상)<br>○ 기획재정부 지침 및 해양수산부 여타 부서(국제협력총괄과 등)의 발주 기준과 동일하게, 행사 금액과 관계없이 국제행사 건수 기준(5건 만점)으로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기준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 |
| 발주처 답변 | 1. 실적기준 관련 중소업체의 진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국제행사 실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5천만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본 과제의 경우는 경쟁에 의한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임.<br>2. 타 용역과의 통합발주에 관한 가점 부분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일반공고 예정임 |

| | |
|---|---|
| 등록 일자 | 2018.01.15 |
| 발주처 | 경기도 파주시 |
| 업체 의견 | 과도한 실적 제한 완화 요청 |
| 발주처 답변 | ○ 참여기술자 실적 : 내실 있는 과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2.1억원)을 적용하여 존치<br>○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용역을 유사용역의 범위에 포함 |

| | |
|---|---|
| 등록 일자 | 2018.04.11 |
| 발주처 | 경상남도 거제시 |
| 업체 의견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및 작성기준의 참가자격 내 최근 10년간 부유식 방파제가 포함된 항만 및 해안 설계 실적 업체로 제한 자격을 완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유식 방파제는 중력식 방파제 보다 설계 및 시공이 용이하므로, 외곽시설 방파제 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 특정 실적으로 제한에 따른 자격완화 요청 수용 반영 |

· 유형 3) 과도한 인증요구

<과도한 인증요구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1.08 |
| 발주처 | 한국공항공사 |
| 업체 의견 | ·귀 기관의 사전규격 내용 중 제품인증에 관한 의견을 송부 드립니다.<br>첨부 파일 (제품 인증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 |
| 발주처 답변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차후 통합연계, 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함 |

| | |
|---|---|
| 등록 일자 | 2018.03.30 |
| 발주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 업체 의견 | ·6. 기타사항<br>※ 내하중 등급 3등급 이상 시험성적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br><건의사유><br>위 기타사항에 명시 되어있는 입찰 조건을 변경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br>통상 반사형방음판은 규격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바 사전규격에 명시된 규격은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 관계로 내하중성적서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고 또한 시험평가기관에서 내하중시험 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주 이상이므로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내하중성적서 이외의 시험 성적서도 각각 시험소요기간이 최대 20일에서 70일이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기타사항의 조건을 낙찰 후 제품 납품 이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한다로 변경 요청바랍니다. |
| 발주처 답변 | “시방서 상 내하중 등급 3등급 이상 시험성적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입찰조건 변경<br>ㄱ 당초 : 내하중 등급 3등급 이상 시험성적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br>ㄴ 변경 : 내하중 등급 3등급 이상 시험성적서를 낙찰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품 납품 5일전까지 제출<br>※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 |

| | |
|---|---|
| 등록 일자 | 2018.05.04 |
| 발주처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
| 업체 의견 | ·1.인증서평가에서 KC.KS.CA인증서중 한 가지만 있어도 배점이 20점인가요?<br>그리고 CA인증 경우 민간인증기간인데 국가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민간기관에서 인증하는 인증서를 높이 평가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br>민간인증인 CA인증은 평가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
| 발주처 답변 | 1. 제안서 평가 배정표는 일부 수정될 예정입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안에 의거하여 민간인증기관인 CA인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2.14 |
| 발주처 | 고용노동부 |
| 업체 의견 | 방화벽을 제외한 타 보안장비 규격은 하드웨어 일체형 CC인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방화벽은 국제 CC인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CC인증 명시 시 국내 방화벽 제조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내 방화벽 제조사 장비도 원격지원 및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 국내 제조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ECR-03]규격을 국제 CC인증 NDPP 획득장비 에서 하드웨어 일체형, CC인증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수용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 유형 4)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긴급입찰 남용)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2.26 |
| 발주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 업체 의견 | 동결건조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되어있으며.. 긴급구매로 납기가 짧은 것은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느낌이 많습니다. 납기는 60일로 해서 입찰 올리시길 요청 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 유형 5) 수의계약 남용

<수의계약 남용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2.01 |
| 발주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
| 업체 의견 | 대체대용품이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br>당사를 포함하여 전국 4개 업체가 도류벽을 생산 및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br>(배수지 내 도류벽 시공 시 법적 근거를 만족시키는 업체)<br>따라서 대체대용품이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발주처 답변 | |

| | |
|---|---|
| 등록 일자 | 2018.04.24 |
| 발주처 | 경기도 양주시 |
| 업체 의견 | 1. 양주신천하수처리장 섬유 디스크필터용 섬유여과포 및 자동세척노즐은 국내 대체, 대용품이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br>2. 발주 규격서의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포 교체 검토서 에 대한 첨부파일의 의견 내용에 근거 경쟁입찰 구매 시에도 기 운영 중인 섬유 디스크필터와의 호환성(수질, 기밀성, 내구성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발주처 답변 | |

· 유형 6) 과도한 인력요구

<과도한 인력요구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5.03 |
| 발주처 | 대검찰청 |
| 업체 의견 | 수행책임자는 사업자 소속으로 정보화사업의 PM 3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PMO 사업 수행 과정 전체에 1회 이상 수행한 경험 또는 정보화사업 PMO 수행책임자를 3회 이상 수행한 자<br>건의사유 : 수행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조건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PMO수행기간과 무관하게 횟수만 요구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br>변경요청 내용 : 수행책임자는 사업자 소속으로 PMO 수행경험이 6개월 이상인자 |
| 발주처 답변 | 수행책임자에 대한 요구조건을 변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5.25 |
| 발주처 | 한국문화정보원 |
| 업체 의견 | 사전규격, 64페이지 내용 중 아래 내용에 대해 수정 가능할까요? (다른 RFP엔 없는 내용이어서 문의 드립니다.)<br>○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br>- 사업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 1명<br>- 사업수행책임자(PM) : 1명<br>※ 사업수행책임자(PM)은 1년 이상 근속한 인력이어야 함<br>- 사업수행관리자(PL): 8명(기획PL, 시스템개발PL, 시스템운영PL, DB구축PL)<br>※ 사업수행관리자(PL)는 1년 이상 근속한 인력이어야 함<br>- 아울러, 기능별 전문가 또는 업무별 전문가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 발주처 답변 | 사업수행책임자(PM) 및 사업수행관리자(PL) 대상 1년 이상 근속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공고 마감일 이전 정규 자사인력 으로 대체 예정입니다.<br>참고 부탁드립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6.15 |
| 발주처 | 경상남도 |
| 업체 의견 | 제안서 평가기준 정량 평가부분(제안요청서 11페이지)의 외국어 가능 인력 총 인원수 배점에 본 사업의 과업량과 사업비 대비 너무 많은 인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br>이에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인원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비 대비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어 가능 인력 총 인원수에 대한 심사항목을 삭제하고, 참여기술인력 심사항목인 마케팅 능력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1.02 |
| 발주처 |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과학정보원 |
| 업체 의견 | 제안요청서 31페이지 기술성 평가기준의 라)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의견입니다.<br>기술인력 보유현황의 배점이 6점으로 매우 큰 점수이고 평가기준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커 원주지역업체나 소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할 때 제약이 큽니다.<br>평가기준의 인원 수나 평점의 차이를 줄여 지역업체나 소기업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며 작은 기업들도 경쟁 및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의견주신 내용을 수용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평가기준을 낮췄으며 평점의 최저점도 상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형 7) 특정규격 요구

<특정규격 요구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1.30 |
| 발주처 | 대전보건대학교 |
| 업체 의견 | · SEFA (Science Equipment & Furniture Association) 8 Standard 및 KS G 4012 Standard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실을 구비하여 전문 품질관리자의 자체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시된 제작 사양이 일반 사양이 아니고 업체 지정 사양으로 입찰이 불가능하므로 재검토 요청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 공개규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SEFA (Science Equipment & Furniture Association) 8 Standard 및 KS G 4012 Standard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실을 구비하여 전문 품질관리자의 자체 성능 테스트를 및 업체지정 사양이라 할 수 있는 규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재 사전공고 예정이니 업무에 참조 바라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1.30 |
| 발주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 업체 의견 | 현재 시방서에 있는 사양은 특정 제품의 사양으로서 공급 업체는 한군데 입니다. 저희는 미국 텔레다이나믹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사양서와 비교하여 밑줄로 표시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사용되는 자주대차(북카)로서 사양은 유사하고, 운송무게는 15kg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방서는 10kg까지 입니다. 제조사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에 사용 되는 북카 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모두 적용 가능하며, 오히려 15kg까지 운송이 가능한 고 사양입니다. |
| 발주처 답변 | 귀하께서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규격사항 등을 공급사 표준사양으로 변경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규격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서고자료운송시스템 납품 및 설치』 사업에 적합하게 제안하시면 됩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1.31 |
| 발주처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
| 업체 의견 | · 금번 지능형 우편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사전공고 관련 UI플랫폼 S/W의 사전규격에 이의가 있어 의견을 등록합니다.<br>스펙 중에서, “- 개발환경은 UI와 자바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환경으로 제공” 부분은 I사의 W제품만 가능한 사항으로 독소조항이오니, 삭제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 특정 규격조항(개발환경은 UI와 자바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환경으로 제공) 관련된 기능내용은 좀 더 많은 업체 참여 가능토록 해당 조항 조정 예정 |

| | |
|---|---|
| 등록 일자 | 2018.02.08 |
| 발주처 | 충청북도 |
| 업체 의견 | 구매물품의 제품규격이 국외 특정업체의 사양서를 첨부하여 관련업체 일부만이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공정하지 못함<br>특징 중 목 보호쉘은 낙상 및 충격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보호, 특수한 damping 구조의 내부 shell은 머리와 척추에 직접 전달되는 충격을 방지(3point 서스펜스 및 충격흡수제),헬멧의 높낮이 조절가능, 청력기 미사용 시 헬멧 내부로 삽입할 수 있는 구조<br>목보호 곡면판, 특수한 damping, 3point 서스펜스  및 충격흡수제, 헬멧 높낮이 조절, 청력보호기 헬멧 내부로 삽입 재료나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이런 용어들이 발주처의 일방적인  소지가 있어 검수 시 이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도면, 현품설명 등 필요함<br>발주시 채택된 색상 및 디자인을  계약 후 수요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라고 하여 조달업체의 불이익 우려됨 |
| 발주처 답변 | 구매 물품의 도면 현품 설명 및 세부 사양을 명기 하기는 어렵습니다.<br>색상 및 디자인을 협의하지 않으면 업체 편의에 맞게 제품을 납품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요 부서의 특성에 맞게 낙찰 업체와 협의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임 |

| | |
|---|---|
| 등록 일자 | 2018.02.27 |
| 발주처 | 경상남도 산청군 |
| 업체 의견 | 산청군 보건소 건에 관하여 사양서에 특정모델의 사진 및 모델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찰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입찰에 관한 법률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모든 사진 및 특정모델명의 삭제를 요청드리오며 동등이상이라는 문구를 삽입 요망합니다. |
| 발주처 답변 | 안녕하세요. 산청군 보건의료원입니다.<br>귀하께서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사양서의 사진 및 모델명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1.29 |
| 발주처 | 충청남도 천안시 |
| 업체 의견 | 공고된 출력기기가 한 업체의 모델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br>규격의 모델로는 다른 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져 참가가 힘듭니다.<br>사양을 조정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발주처 답변 | 출력기기 납품 규격은 타사 제품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사양으로 선정하였음.<br>귀하께서 요청하신 의견은 반영 수용코자 함. |

| | |
|---|---|
| 등록 일자 | 2018.12.27 |
| 발주처 | 한국수출입은행 |
| 업체 의견 | 기술제안요청서의 요건 중 특정 개발환경(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로 제한하여 타 개발환경으로는 사업참여 제한되어 이에 이의를 신청하며, 상세내용은 첨부한 문서 검토 바랍니다. |
| 발주처 답변 |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부분을 삭제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 유형 8)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11.15 |
| 발주처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
| 업체 의견 |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은 실질적으로 공기충전기 납품업체가 주도하여 입찰함으로 본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은 타시도 소방본부(강원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입찰 시행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방법으로 입찰해야 많은 업체들이 공정하게 입찰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주성인터내셔널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 |

| | |
|---|---|
| 등록 일자 | 2018.11.22 |
| 발주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
| 업체 의견 | 입찰응모자격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중 1개 이상/ 단독(공동계약 불가)<br>건의사유<br>건축, 조경, 도시 등 전문분야와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학술연구 등)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건의<br>과업내용상 활성화계획 수립 외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전담인력 파견(2인), 공동체 활성화방안 마련 및 지원이 중요한 과업요소 중 하나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분야 협업체계 구축필요 |
| 발주처 답변 |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 중 공동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후 추후 반영여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

· 유형 9)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12.04 |
| 발주처 | 경기도 평택시 |
| 업체 의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은 주로 비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업자 선정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과업의 경우에는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등 건설부문의 기술자를 평가하고 실제 이러한 기술자에 의해 과업이 수행되므로 과거의 타지자체의 발주사례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PQ발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경기도 등)으로 변경하여 발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 유형 10)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3.14 |
| 발주처 | 외교부 |
| 업체 의견 | 제안요청서 9페이지의 평가항목 중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는 세부 배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규모가 큰 업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객관화된 세부 배점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br>또한, 최근 공고된 귀 부처와 귀 부서의 행사 입찰공고를 첨부해 드리니, 세부 배점 기준에 반영하시어 입찰에 참가하는 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안내용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 발주처 답변 | 2018 쿠바 정책세미나 행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평가항목 중 정량평가가 필요한 항목(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유형 11) 통합발주

<통합발주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2.05 |
| 발주처 | 산림청 |
| 업체 의견 | 당사는 전선관 제조업체로서 KS C 8454 (세부품명번호3913170607)과 KS C 8455(세부품명번호3913170606)를 생산하고 있습니다.<br>HI-PVC는 원료가 PVC이고 ELP의 경우는 재질이 HDP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생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가 국내에 2개사밖에 없습니다<br>그렇기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LH공사, 서울주택공사(구 SH공사)등 에서도 배관자재에 대하여 사용할 배관자재 중 한 가지만 직접생산증명이 있어도 입찰참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ks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함) 따라서 저희 희망사항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직접생산증명만 있으면 입찰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HI-PVC와 ELP를 분리발주하셔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주처 답변 | 사업부서 검토 요청하여 분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2.06 |
| 발주처 | 부산광역시 동구 |
| 업체 의견 | 이 사업은 교환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의 20분의1정도의 부가장비 하나 때문에 부가장비업체들만 가지고 있는 직접생산증명서(자동안내장치)를 걸어 놓았다는게 이해가 안 되고 특정업체몰아주기 라고 뿐이 생각이 안듭니다.<br>타 업체들도 정정당당히 서로 경쟁할 수 있게 위의 직접생산증명서(자동안내장치)는 다시 한번 삭제 또는 분리발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 발주처 답변 |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오니, 시방서(최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7.13 |
| 발주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업체 의견 | 내역서 상에 있는 폐합성고무 는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아님으로서<br>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아닌 처리가 가능한 별도의 처리업체(소각,매립 등)에<br>별도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r>*첨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서 |
| 발주처 답변 | 귀하의 의견대로 폐합성고무는 분리하여 발주할 예정입니다<br>현재 분리 설계 완료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0.24 |
| 발주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부평초등학교 |
| 업체 의견 | 제안요청서 3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성(안) 내용 중 스크린은 영사용 스크린으로 영상구현기는 비디오프로젝터로 운영시스템 중 PC는 데스크탑컴퓨터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br>특히 영상구현기는 기존 타 입찰에서 비디오 프로젝터라고 명시되었으나 민원을 제기하니 영상구현기라는 특이한 단어로만 바꾸었습니다<br>규격까지 바꾸지 못하기에 밝기(ANSI)만 빼고 한꺼번에 입찰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br>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유형 12) 부적정한 평가 방식

<부적정한 평가 방식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4.10 |
| 발주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 업체 의견 | 제안요청서 16-17페이지의 평가항목 중 기술인력 보유정도, 재정건정성의 평점은 규모가 큰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세부 배점의 완화를 요청드립니다.<br>첨부하는 유사 입찰 공고를 참고하시어, 적정규모의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발주처 답변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03.22 |
| 발주처 | 한국재정정보원 |
| 업체 의견 | 제안요청서상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br>현재 평가기준은 사업이해도, 기능요구사항에 배점이 집중되어 있어 결국 기존사업자(dBrain, e나라재산)가 거의 100% 수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br>타 공공기관 또한 업무를 많이 아는 사업자가 수주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공정성과 객관적 평가에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SI 업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배점기준을 만듭니다. 첨부파일에 보듯이 사업규모가 더 크고,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사업 또한 배점이 공정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주처 답변 | 본 사업은 일부 기존업무 개선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규구축 업무로써 기존(dBrain, e나라재산) 사업수행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이해 및 기능요구 분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br>다만, 귀사의 우려에 대해 검토결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편차 완화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하겠습니다.<br>* 수용 : 배점편차 완화 |

| | |
|---|---|
| 등록 일자 | 2018.11.13 |
| 발주처 | 경기도 고양시 |
| 업체 의견 | 제안요청서 p22 중 나. 경영상태에 대한 배점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br>고양시의 신용평가 등급 배점간의 차이가 타 지자체 및 작년과 비교하여 너무 많이 납니다.<br>현재 사전공고 진행 중인 동일한 2019년 유지보수 용역인 성남시청과 은평구청만 보더라고 배점 차이가 0.3점입니다.<br>작년 고양시의 경우 0.2점이였습니다.(작년 타 지자체는 0.2~0.3)<br>배점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안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br>이 배점간의 차이를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 발주처 답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맞게 변경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1.27 |
| 발주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
| 업체 의견 | 에너지소비등급 배점 조정을 요청합니다.<br>에너지소비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기청정기의 경우 냉난방기 제품과 달리 3등급이라 하더라도 에너지소비량이 매우 적게 나옵니다.<br>3등급 제품 중에서도 공기청정기 효율성면에서 매우성능이 좋은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br>공기청정기 선정이 에너지소비등급 배점으로 인해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br>에너지소비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평가항목에서는 모든 제품이 10점을 받습니다.<br>결국 에너지등급에서 결과가 달리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br>3등급 제품도 제품설명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능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배점조정이 필요합니다.<br>상세규격에 에너지소비등급 1~3등급으로 적시하여 3등급 제품도 참가가 가능하게 한 상황에서 타시도와 같이 3등급 배점을 높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br>타시도 예) 1등급 10점, 2등급 8점, 3등급 5점 |
| 발주처 답변 |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여 소비전력이 적은 제품을 선택도록 되어 있어 등급에 따라 가점을 주었던 것이며,<br>다만, 제품의 다양성·효율성 및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3등급 이상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배점의 격차를 두어 1등급 10점, 2등급 6점, 3등급 2점으로 수정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 유형 13)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사례>

| | |
|---|---|
| 등록 일자 | 2018.03.12 |
| 발주처 | 충청북도 청주시 |
| 업체 의견 | 고시된 유사용역 및 참여기술자 실적인정범위를 보면 풍수해저감계획이나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평가계획 등 지나친 실적인정범위를 축소하여 특정업체 몇 곳 외에는 참여조차 어려운 과도한기준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사업과동일한 사업을 발주한 타지자체 평가기준을 보더라도 하천관련 설계용역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실적도 인정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지만 지나치게 기준을 강화하여 참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적인정범위(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확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주처 답변 | 하천분야,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및 배수펌프장까지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 |

| | |
|---|---|
| 등록 일자 | 2018.04.16 |
| 발주처 | 경기도 이천시 |
| 업체 의견 | P32의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중에서 지자체와 맺은 계약서, 협정서, 협약서 등도 실적건수로 인정 요청합니다(사본 제출)<br>-협약서에는 금액은 표기되지 않음(금액은 가변적임으로 사용량에 따라 줄 수도 있어 표기치 않음) |
| 발주처 답변 | (수용) 평가항목 내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협약한 사업수행실적 건 수”로 반영하겠습니다. |

| | |
|---|---|
| 등록 일자 | 2018.11.27 |
| 발주처 | 경기도 평택시 |
| 업체 의견 |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의 경우 과업의 성격상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평가 등은 유사용역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유사용역이라 판단됩니다.<br>타 지자체의 발주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평가 등이 유사용역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br>따라서 본 과업인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유사용역으로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평가 등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br>또한 유사용역의 분야가 너무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참여가 불가능 하거나 최소 PQ 점수조차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
| 발주처 답변 | 과업지시서상에 타당성조사 과업이 포함되어 있고, 본 과업의 성격상 도로신설에 대한 타당성(논리) 개발이 필요하므로,<br>[유사용역 인정범위] 유사용역의 인정범위에 (도로분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평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가하고,<br>[유사용역 인정비율] 인정비율은 3개 종류 모두 30%비율로 반영할 계획임 (용역종류별 반영비율 결정은 발주청 재량사항임). |

| | |
|---|---|
| 등록 일자 | 2018.12.12 |
| 발주처 | 경상북도 군위군 |
| 업체 의견 | 본 용역은 2017년도 재정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발주되고 있습니다(현재 철원군, 양평군, 울진군 발주). 이에 당해용역과 같은 유사용역 실적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타 지자체 발주사례에서 보듯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주처 답변 | 본 과업의 내용 및 타시군 발주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사용역의 인정 범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추가하여 본 용역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

# 제2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원인 분석

## 1. 경쟁제한 행위의 사례와 원인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

### 가. 인터뷰 내용

| 조달 경쟁제한 행위 인터뷰 결과 정리 (IT용역 분야) | |
|---|---|
| 인터뷰 기관 | (주) 아이디어정보기술 |
| 일시/장소 | 2019.7.10.(수) 15시~16시 / 한국조달연구원 |
| 대상자 | • 유홍배 (대표) |

○ IT용역입찰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실적제한과 특정 스펙의 소프트웨어, 기자재 등을 요구하는 행위임

○ 실적제한은 고시금액 미만 사업건에도 시행되는데, 예를 들어, 8천만원 정도의 기초금액 IT용역에 있어, “최근 3년 이내 관련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몇천만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는 형태로 입찰공고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공급이 독점된 특정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거나 하드웨어의 규격이 특정 벤더만의 규격으로서 다른 공급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 특정 IT, 업무 실적이 있는 인원만 연구책임 또는 투입인력으로 강제하는 경우 경쟁이 고도로 제약됨(출신학교나 학력 게재 사례도 존재함)

○ 이러한 경쟁제한적 공공발주 사례의 원인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계약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과거 담당자의 입찰공고서 등 조달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업무 미숙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조달 경쟁제한 행위 인터뷰 결과 정리 (IT용역 분야) | |
|---|---|
| 인터뷰 기관 | (주)이지서티 |
| 일시/장소 | 2019.7.10.(수) 15시~16시 / 한국조달연구원 |
| 대상자 | • 심기창 (대표) |

○ 특정 시스템 구축 실적을 정량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당해 유사 실적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하여 경쟁제한적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국제표준 이중화프로토콜이 아닌 특정제조사의 이중화 프로토콜 또는 특정 보안솔루션 적용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 경쟁이 고도로 제한됨

○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정량평가기준에 과도한 점수 비중으로 반영되어 소규모 업체의 입찰참여가 제약되는 사례가 존재

○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술자격(예를 들어, Microsoft MCP , ORACLE OCP, IBM Expert 등) 보유인력조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 발주담당관의 경쟁제한적 행위에는 특정 규격을 못 박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업체와 발주담당관의 유관 관계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경쟁제한적 규격이나 실적 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존재함

| 조달 경쟁제한 행위 인터뷰 결과 정리 (물품제조 분야) | |
|---|---|
| 인터뷰 기관 |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함 |
| 일시/장소 | 2019.7.15.(월) 10시~11시 / 중소기업중앙회 |
| 대상자 | • 조일출 (팀장) |

○ 확정된 실적평가기준 제시가 아닌 “~ 등의 실적” 표현으로 인정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는 등 협소한 실적인정의 경우 경쟁이 제한됨

○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평가 요소와 관련해, 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이외에 별도의 PM의 사업수행 경력 등을 근거 없이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사례 존재

○ 규격서(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특정회사의 특정상표나 독점적 지식재산권을 포함되어 독점공급되는 기자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경쟁제한적 입찰공고 내용이 업체와의 유착 등 특정 의도를 지닌 경우도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발주기관이 사업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례도 있어, 좀 더 세부적인 업종별 실태 검토가 필요함

| 조달 경쟁제한 행위 인터뷰 결과 정리 (기술용역 분야) | |
|---|---|
| 인터뷰 기관 | (주) 유신 |
| 일시/장소 | 2019.7.17.(수) 10시~11시 / 엔지니어링협회 |
| 대상자 | • 정철구 (전무) |

○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요소는 사업수행실적임. 특히 PQ 평가시 예를 들어, 취배수시설 설계 실적 등 협소한 분야의 사업실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실제 한국수자원공사 입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수도사업 실적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실적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6~7개 회사인 경우가 있었음

○ 다양한 복합공종 사업을 일괄발주하게 되면, 경쟁이 많이 제한되게 됨

○ 자체발주기관 입찰과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청 입찰이 평가방식, 자격, 협정서, 입찰참가신청의 일자와 조건, PQ서류 등과 관련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각 자체발주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검색하는 등 엔지니어링업체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나라장터에서 상기 사항을 공급업체가 한번에 검색 가능하도록 개편이 필요

| 조달 경쟁제한 행위 인터뷰 결과 정리 (전문가 분야) | |
|---|---|
| 인터뷰 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
| 일시/장소 | 2019.8.5.(월) 13시~14시 / 중소기업연구원(서울) |
| 대상자 | • 이정환 (연구원) |

□ **인터뷰 결과**

○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실제적인 입찰제한 요소는 실적요구임. 고시금액 미만에서도 다양한 입찰에 있어 실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소 이질적 성격의 물품, 용역 업무를 일괄발주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경우 또한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특정 규격 또는 사양을 요구하는 유형은 다양한데, 명확한 기준제시가 어려운 경우 또한 존재하나 최소한의 선별기준 마련은 필요함

○ 일부 발주 담당관은 기재부 “계약예규” 나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최근 개정 내용 중 입찰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적 및 규격 완화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 입찰경쟁성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잘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발주 담당관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나.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 다양한 입찰경험을 지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발주 담당관과 특정 업체의 유착관계가 경쟁제한적 발주 행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경쟁성과 관련된 입찰규정이나 업무기준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경쟁제한적 입찰 시행의 원인일 수 있음을 지적함

○ 자체발주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 조달업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일부 업계에 정보제공을 의존하게 되고, 경쟁제한적 내용이 입찰공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자체발주기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물품이나 용역 이외에 특수한 용도나 사업목적에 이용되는 조달물자를 다수 구매하게 되면서 외부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주처 계약담당자와 조달업체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

○ 실적제한이 흔히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행위인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실적과 부적정한 실적에 대한 좀 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 자체발주기관 입찰과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청 입찰이 평가방식, 자격, 협정서, 입찰참가신청의 일자와 조건, PQ서류 등과 관련해 상이하게 운용되면서 각 자체발주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검색하는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를 한 번에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입찰서류를 표준화하는 등의 개편이 경쟁제고와 업계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2. 경쟁제한 행위의 원인 개관

### 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경쟁조건 이해 미비

○ 자체발주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 조달업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담당자가 경쟁성과 관련된 입찰규정이나 업무기준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업계에 정보제공을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쟁제한적 내용이 입찰공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나. 발주기관 담당자와 조달업체 유착 가능성

○ 또한 자체발주시 체계적이고 다층적 입찰공고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 계약담당자와 조달업체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경쟁제한적 입찰공고서 내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다.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필요 충족

○ 앞서 진행된 사업 및 구매의 결과가 만족스러웠거나 이력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 목적 달성을 최적화하려는 의도로 경쟁제한적 행위 시행

### 라. 업무(판단) 기준의 불명확

○ 예를 들어, 실적제한의 경우 허용되는 실적과 과도하거나 부당한 실적제한의 경계점이 모호한 사례처럼, 업무 판단 기준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경쟁제한적 입찰공고가 행해질 수 있음.

○ 앞서 선별한 경쟁제한행위 중 경쟁제한정도를 평가해보면 입찰참여가능여부를 가늠하는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가장 고도의 제한행위를 평가할 수 있음

## <경쟁제한행위 유형별 원인 분석>

| 유형 | | 경쟁제한의 정도 | 주된 원인 |
|---|---|---|---|
| ● 입찰자격 관련 | ▶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약 | 높음 | 전문성 부족/정보 부족 |
| | ▶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 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 부적정한 지역제한 | | 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 수의계약 남용 | | 전문성 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 특정규격 요구 | | 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 | 입찰효율성 추구/특정업체 선호 |
| | ▶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 | 전문성 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 통합발주 | | 입찰효율성 추구/특정업체 선호 |
| | ▶ 부당한 인증요구 | | 전문성 부족/정보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평가기준 관련 | ▶ MAS 또는 쇼핑몰 불이용 | 중간 | 업무부주의/정보 부족 |
| | ▶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 | 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 |
| | ▶ 과도한 인력요구 | | 전문성 부족/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 |
| | ▶ 학력사항표기 | | 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 |
| | ▶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 | 전문성 부족/정보 부족/특정업체 선호 |
| | ▶ 부적정한 평가 방식 | | 전문성 부족/정보부족/특정업체 선호/업계유착 |
| | ▶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 | 입찰효율성 추구/특정업체 선호 |

## 3. 시사점 : 경쟁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

❍ 앞서 살펴본 바,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유형이 다양화 · 고도화되어 있음. 이에 각각의 유형 별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함

**<경쟁제한행위 유형 별 대응방안 정리(제3장에서 상세 서술)>**

<table>
<tr><th>경쟁제한행위 유형</th><th>주요 원인</th><th colspan="2">경쟁성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th></tr>
<tr><td rowspan="2">입찰참가자격 관련</td><td>전문성 부족/정보 부족</td><td>1.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제공 및 나라장터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td><td>○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br><br>○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방안 마련</td></tr>
<tr><td rowspan="3">평가기준 관련</td><td>업계유착</td><td rowspan="3">2. 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평가 업무 신설</td><td rowspan="3">○ 사전규격검토 의견등록 내용에 대한 업계와 발주처 이견 조정<br><br>○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업무 신설<br><br>○ 자체발주기관의 공공발주 경쟁성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td></tr>
<tr><td>판단기준의 불명확</td></tr>
<tr><td>특정업체 선호</td></tr>
</table>

## 가.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제공 및 나라장터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1) 주요 관심 업종에 대해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 자체발주 기관이 유사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조달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조달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쟁제한 행위 발생을 최소화

–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 제안요청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발주 실무 가이드 정보 제공 사례 참고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사례>**

〈 가이드 안내 〉


Ⅰ. 일반사항 ····· 9
1. 배경 및 필요성 ····· 11
2. 목적 및 적용범위 ····· 14
3. 관련 法.制度 및 지침 현황 ····· 15

Ⅱ. 가이드 체계 ····· 17
1. 가이드 수립 개요 ····· 19
2. 가이드 구성 체계 ····· 22
3. 용어설명 ····· 23

Ⅲ. 기술환경의 이해 ····· 25
1. ICT 란? ····· 27
가. ICT 개요 ····· 27
나. ICT 기술 적용 동향 ····· 28
2. 국가정책 동향 ····· 30

Ⅳ. ICT장비 규격 요구사항 표준화 ····· 33
1. ICT장비 규격 표준화 개요 ····· 35
가. 표준화 관련 현황 ····· 35
나. ICT장비 규격 표준화 방향 ····· 35
2. ICT장비 규격 표준화 범위 및 대상 ····· 36
가. 규격 표준화 범위 ····· 36
나. 규격 표준화 대상 ····· 37
3. ICT장비 규격 표준화 내역 ····· 39
가. 네트워크 부문 ····· 39
나. 방송장비 부문 ····· 70
다. 컴퓨팅 부문 ····· 73

V.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 ····· 77
1.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 및 절차 ····· 79
가. 제안요청서 체계 ····· 79
나. 제안요청 요구사항 구분 ····· 80
다. 제안요청서 목차 및 작성지침 ····· 81
라. 제안요청서 작성 절차 ····· 84
2.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 87
가. 제안요청서 작성 준비 ····· 87
나. 목표시스템 구성 정의 ····· 88
다. 장비규격 요구사항 작성 요령 ····· 90
라. 장비규격 요구사항 작성 예시 ····· 93
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96
4. 제안요청 안내 작성 방법 ····· 99
VI. 사업자 선정 · 평가 방법 ····· 107
1. 평가 원칙 및 방법 ····· 109
가. 평가 원칙 ····· 109
나. 평가 방법 ····· 109
다. 선정 절차 ····· 110
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 111
가. ICT장비 구매시 기술능력 평가서 예시 ····· 111
나. SW사업과의 통합발주시 평가예시 ····· 113
부 록 ····· 119
A. ICT장비 기능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예) ····· 121
B. ICT 참조모델 ····· 143
C. 참고문헌 ····· 145


–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3

##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방안 마련

○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시스템을 통한 고지 및 안내) 선별된 공공발주 경쟁제한행위 중 입찰공고시 자주 발생되는 업종의 부적정한 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에 대해 팝업창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 시행

<공공발주 경쟁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나라장터 시스템 대응 예시>

| | |
|---|---|
| ● 입찰자격 관련 | ▶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원) 미만 제조 또는 용역계약 실적제한 적용 금지 / 실적 인정기간(규정상 10년) 준수 |
| | ▶ 부당한 지역제한 :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중복 적용 금지 |
| | ▶ 특정규격 요구 : 발생 빈도 높은 규격 집중 관리 |
| | ▶ 통합발주 : 물품+용역 구매 집중 관리 |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입찰공고서 이외에도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의 경쟁 제한 요소 검토 소프트웨어 적용도 가능

### 3) 자체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사전컨설팅 제공

○ 감사원은 최근 적극행정 추진 시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요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을 적용하는 “감사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운영

<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개관>

가. 사전컨설팅의 개념

·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감사원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 주의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을 신설함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나. 사전 컨설팅 대상 및 절차

(1) 신청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의 교육감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소속기관 등은 먼저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장이 검토를 한 후 감사원에 신청을 할 수 있음

(2) 컨설팅 대상

·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3)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주체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송부함

(4) 검토 및 결과회신

·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 사전컨설팅팀)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중요사안의 경우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자문위원회 논의 시 60일)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하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한 연장 가능

(5)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달청이 자체조달기관의 신청을 받아 입찰진행 내용의 적정성을 컨설팅하는 “입찰업무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입찰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평가 업무 신설(제3장 상세서술)

### 1)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구축 및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개발) 입찰공고서 이외에도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조달정보를 검증하여 경쟁제한 행위를 1차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조달청의 경쟁 적정성 심사) 1차 선별된 경쟁제한적 내용은 조달청 조달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적정성 심사 후 경쟁제한요소를 발주기관에 통보·협의하며, 협의 불가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제한

### 2)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 수립 및 운용

○ 조달청의 사전규격공개 관련 이의 조정 결과와 자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조달정보 등을 통한 사전심사 결과를 통해 자체조달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9년 7월 공공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정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아래 표 참조)들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 모델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음

## <공공시설공사 발주자 공정성 평가항목 사례>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항목**

| 예산·예정가격 관련 | 입낙찰 관련 |
|---|---|
| 1.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내역서를 작성<br>2. 부당한 삭감 없이 공사비를 산정<br>3. 복수예비가격 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br>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요율 준수 | 5. 부당한 제약·제한 없이 입찰참가 기회 제공<br>6. 적절한 수준 및 분량의 입찰자료 요구<br>7. 입찰과정에서 설계도서 열람의 기회 제공<br>8. 발주자 간섭·강요 없이 하도급자 또는 자재업체의 선정 |
| **부당특약 관련** | **공사비 조정 관련** |
| 9.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 청구권 보장<br>10. 계약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 적절하게 설정<br>11. 공사 규모에 맞는 숫자의 현장기술자 배치 요구 및 추가 배치를 요구시 노무비 지급 | 12. 설계변경에 대한 항목인정 및 단가조정 등을 규정에 준하여 처리<br>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br>1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절하게 조정 |
| **공사비 지급 관련** | **발주자 역할 및 우월적 지위 관련** |
| 15. 기성 및 준공대가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적정하게 지급<br>16. 발주자 지시에 따른 휴일작업,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br>17. 계약범위 이외의 추가업무(인허가, 민원, 용지보상등), 추가공사, 특화공사에 따른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br>18. 신기술·신공법에 대한기술료 및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지급 | 19. 뇌물 요구, 부당 압력, 보복 행위 등이 없이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br>20. 시공자의 이의신청을 적절하게 대응<br>21.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 클레임을 적절하게 처리<br>22. 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사 지체에 따른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br>23. 관급자재의 하자, 누락, 반입 지체에 대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br>24.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노조파업 등에 의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 모델”, 2019.7.

## <공공시설공사 발주자 공정성 평가항목별 중요도 및 평가결과(7점만점)>

| 분류 | 평가항목 | 중요도 | 현재수준 | Gap |
|---|---|---|---|---|
| 예산·예정 가격 관련 평가 | 1.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내역서 작성 | 6.04 | 4.80 | 1.24 |
| | 2. 부당한 삭감 없이 공사비 산정 | 6.07 | 3.90 | 2.17 |
| | 3. 복수예비가격 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 | 5.59 | 5.20 | 0.39 |
|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요율 준수 | 6.04 | 5.89 | 0.15 |
| 입·낙찰 관련 평가 | 5. 부당한 제약·제한 없이 입찰참가 기회 제공 | 5.52 | 4.57 | 0.95 |
| | 6. 적절한 수준 및 분량의 입찰자료 요구 | 5.10 | 4.17 | 0.93 |
| | 7. 입찰과정에서 설계도서 열람의 기회 제공 | 5.88 | 5.14 | 0.74 |
| | 8. 발주자 간섭·강요 없이 하도급자 또는 자재업체의 선정 | 5.32 | 3.74 | 1.58 |
| 부당특약 관련 평가 | 9.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 청구권 보장 | 6.14 | 3.50 | 2.64 |
| | 10. 계약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 적절하게 설정 | 5.85 | 4.42 | 1.43 |
| | 11. 공사 규모에 맞는 숫자의 현장기술자 배치 요구 및 추가 배치를 요구시 노무비 지급 | 5.29 | 3.45 | 1.84 |
| 공사비 지급 관련 평가 | 12. 설계변경에 대한 항목인정 및 단가조정 등을 규정에 준하여 처리 | 6.16 | 4.27 | 1.89 |
| |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 | 6.15 | 5.31 | 0.84 |
| | 1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절하게 조정 | 6.24 | 3.17 | 3.07 |
| 공사비 조정 관련 평가 | 15. 기성 및 준공대가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적정하게 지급 | 6.00 | 4.99 | 1.01 |
| | 16. 발주자 지시에 따른 휴일작업,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 | 5.85 | 3.31 | 2.54 |
| | 17. 계약범위 이외의 추가업무(인허가, 민원, 용지보상등), 추가공사, 특화공사에 따른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 | 5.86 | 3.26 | 2.6 |
| | 18.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기술료 및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지급 | 5.52 | 4.07 | 1.45 |
| 발주자 역할 및 우월적 지위 관련 평가 | 19. 뇌물 요구, 부당 압력, 보복 행위 등이 없이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 | 6.02 | 4.53 | 1.49 |
| | 20. 시공자의 이의신청을 적절하게 대응 | 5.90 | 3.83 | 2.07 |
| | 21.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 클레임을 적절하게 처리 | 6.09 | 3.43 | 2.66 |
| | 22. 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사 지체에 따른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6.11 | 3.26 | 2.85 |
| | 23. 관급 자재의 하자, 누락, 반입 지체에 대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5.83 | 3.59 | 2.24 |
| | 24. 시공자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노조파업 등에 의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5.97 | 3.03 | 2.94 |
| 전체 평균 | | 5.86 | 4.12 | 1.74 |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 모델”, 2019.7.

○ 공기업 등 자체발주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상생·협력 항목에 개별 기관 발주 경쟁성 평가 지표 결과를 반영하는 것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하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분야 반영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2019년)>

| 범주 | 평가지표 | 계 | 비계량 | 계량 |
|---|---|---|---|---|
| 경영관리 (55) |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 6 | 6 | |
| | - 전략기획 | | 2 | |
| | - 경영개선 | | 2 | |
| | - 리더십 | | 2 | |
| | 2. 사회적 가치 구현 | 24 | 17 | 7 |
| | - 일자리 창출 | 7 | 4 | 3 |
| |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4 | 3 | 1 |
| | - 안전 및 환경 | 5 | 5 | |
|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5 | 2 | 3 |
| | - 윤리경영 | 3 | 3 | |
| | 3. 업무효율 | 5 | | 5 |
| | 4. 조직·인사·재무관리 | 7 | 4 | 3 |
| |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 2 | 2 | |
| |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5 | 2 | 3 (1) |
| |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 8 | 5 | 3 |
| | - 보수 및 복리후생 | 3 | 3 | |
| | - 총인건비관리 | 3 | | 3 |
| | - 노사관계 | 2 | 2 | |
| | 6. 혁신과 소통 | 5 | 3 | 2 |
| | - 혁신노력 및 성과 | 3 | 3 | |
| | - 국민소통 | 2 | | 2 |
| | 소 계 | 55 | 35 | 20 |
| 주요사업 (4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 45 | 21 | 24 |
| | 소 계 | 45 | 21 | 24 |
| 합 계 | | 100 | 56 | 44 |

– 자료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기획재정부, p.12.

## 4. 해외 사례

○ 입찰과 관련해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 사례는 역내 회원국내 공공조달입찰의 경쟁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EU의 2014년 공공조달지침 개정(Directive 2014/24/EU)에서 살펴볼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회원국 발주기관의 입찰집행에 있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입찰규정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접근을 시행함

<입찰 경쟁성 제고를 위한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 개정 내용 개관>

### 1) 입찰참가자를 위한 규정의 단순화

○ 입찰참가자들은 자신의 적합성, 재정상태, 계약이행능력등과 관련해서 예전처럼 입증자료 전체를 제공하는 대신에 자진신고서(self-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음. 이를 위해 유럽단일조달문서(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가 표준화된 문서로 만들어져 있음. 낙찰을 받은 사업자만이 입증자료 전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입증자료 전체의 제공은 사업자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 낙찰된 사업자가 유럽단일조달문서에서 본인의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적시하였다면 발주청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직접 취득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제59조(유럽단일조달문서)**

① 참가요청서의 제출이나 입찰서의 제출시에, 발주청은 유럽단일조달문서(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 ESPD)를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단일조달문서는 관련된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에 대신해서 사전적으로 증거로서 자진신고서(self-declaration)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구성된다.

(a) 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이 배제되어야 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제57조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b) 제58조에 따른 관련된 적격심사기준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c)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객관적인 규칙과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사업자가 제63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역량에 의존할 경우, 유럽단일조달문서

(ESPD)는 이러한 기관과 관련하여 본 항의 1문에서 언급한 정보를 또한 보유해야 한다.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는 입찰참가자격배제와 관련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입찰참가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사업자의 공식적인 선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발주청에 의해서 요구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는 더 나아가 근거문서를 작성하는 책임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제3자를 명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함이 없이 이러한 근거문서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식적인 선서를 담아야 한다.

발주청이 제5항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근거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는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넷주소, 그리고 필요한 동의의 존재 등이 속한다.

②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는 표준적인 양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EU집행위원회는 이행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표준적인 양식을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행위는 제89조 제3항에 의한 심사절차에 따라서 채택되어야 한다.

③ 제9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경을 넘은 접근 및 국제시장에서의 인증과 확인서의 사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절차상 어느 시점에서든지 절차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모든 또는 일부의 근거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입찰참가자와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을 낙찰하기 전에, 제33조 제3항 또는 제33조 제4항(a)에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에 기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은 낙찰을 하려고 결정한 입찰참가자에게 제60조(또는 제62조)에 따라 업데이트된 근거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서 수령한 인증서를 보완하거나 명확화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인증서나 관련된 정보를 직접 회원국의 국내 데이터베이스, 예컨대 국내조달등록처, 가상회사문서(virtual company dossier), 전자문서보관시스템 또는 입찰참가자격시스템 등을 통해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거문서 또는 기타 문서상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미 낙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발주청이 이미 이러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근거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문의 목적을 위해서, 회원국은 사업자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고, 발주청이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같은 조건하에서 다른 회원국의 발주청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⑥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발주청이 접근가능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담

은 데이터베이스의 완전한 목록을 e-Certis에 가능하도록 만들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이 조항에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발주청은 계약을 위해서 적정한 재정 상태를 가진 모든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야 함. 과거에는 중소기업은 입찰참가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왜냐하면 매우 적은 금액의 계약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연간매출액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새로운 지침에서는 요구되는 연간매출액이 일반적으로 계약추정금액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대규모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발주청은 대규모 계약을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이 권장됨.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함

○ 경제적, 재정적 현황을 포함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음

**제58조(적격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은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a) 전문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성,

(b) 경제적, 재정적 현황,

(c) 기술적, 전문적 능력.

발주청은 제2항, 제3항, 제4항에 언급된 기준만을 사업자에게 참여의 요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들 요건들은 후보자 또는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능력 및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요건들에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요건은 계약의 본체와 관련되고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② 전문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발주청은 부록 XI에 정해진 회원국에 설립된 전문가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부록 XI에 정해진 요건들을 충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의 조달절차에 있어서, 서비스가 관련된 원산지국가에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증을 요하거나, 특정한 조직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인증이나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경제적, 재정적 현황과 관련해서는, 발주청은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경제적, 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발주청은 특히 사업자가, 계약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특정한 최소한의 매출이 있을 것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연간매출액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발주청은 자산과 부채간의 비율과 같은 연간회계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주청은 전문직책임보험의 적정수준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연간매출액은 계약추정치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공사, 서비스, 물품의 성질과 관련한 특별한 위험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발주청은 제84조에 언급한 조달문서 또는 개별보고서에 이러한 요건들의 주요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간의 비율은 발주청이 조달문서에서 그러한 고려에 대한 방법이나 기준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이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무차별적이어야 한다.

계약이 분할될 경우에는 이 조는 개별분할계약과 관련해서 적용된다. 만약 낙찰받은 입찰참가자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대여섯개의 분할부분에 대해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발주청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 연간매출기준을 이들 분할부분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서 2단계 경쟁이 실시되는 경우, 이 항의 2문에서 언급한 최소 연간매출기준은 동시에 이행될 예정인 특정계약의 예상최대규모를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추정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역동적 구매절차의 경우에는, 이 항 2문의 최소 연간매출기준은 이 구매절차하에서 낙찰된 특정계약의 예상최대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④ 기술적, 전문적 능력과 관련해서, 발주청은 사업자가 적절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자원과 경험을 보유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건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발주청은 특히 과거에 이행된 계약의 적절한 언급을 통해서 충분한 수준의 경험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치가 필요한 물품 그 외의 서비스나 공사의 조달절차에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기술, 효율성, 경험, 책임성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평가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계약공고나 입찰참가의사의 초청에서, 최소한의 능력 및 이의 입증방법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참가에 요청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 2) 발주청을 위한 규정의 단순화

○ 새로운 지침은 발주청에게 보다 탄력성을 부여하며, 더 많은 선택가능성

을 부여하고, 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구상자접근법(tool box approach)을 따르고 있음. 발주청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절차의 유형과 디자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큰 자유를 갖게 됨

- 협상(negotiation)을 포함하는 절차의 사용가능성이 이전의 지침에 비해서 보다 확대됨. 따라서 발주청은 협상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새로운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는 현재의 '계약사전공고를 통한 협상절차'(negotiated procedure with prior publication of a contract notice)를 대체하였음.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보다 명확하게 구성되었음. 이는 입찰내용의 개선 및 발주청이 협상에서 최선의 조달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발주청에게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가 보다 단순화되고, 보다 사용가능하도록 되었음. 새로운 지침에서는 같은 조건하에서 발주청이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와 '경쟁적 대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 새로운 지침에는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들어갔고, 이 절차는 연구서비스와 구매요소를 영리하게 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토록 함

**제26조(절차의 선택)**

① 제32조의 위반이 없이 경쟁입찰의 공고가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발주청은 공공계약을 낙찰할 때 이 지침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국내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② 회원국들은 발주청이 이 지침에서 규율되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③ 회원국들은 발주청이 이 지침에서 규율되는 혁신파트너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④ 회원국들은 발주청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a) 건설, 물품, 서비스와 관련해서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 발주청의 필요가 이미 사용가능한 해결책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충족될 수 없는 경우,

(ii) 발주청의 필요가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경우,

(iii) 성격, 복잡성, 법적·재정적 현황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사전협상이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경우,

(iv) 부록(Annex) VII의 (2)-(5)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준, 유럽기술평가(European Technical Assessment), 공통기술규격 또는 기술참고자료를 통해서 발주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b) 건설, 물품, 서비스와 관련해서,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절차를 통해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수용불가능한 입찰만이 제출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제57조부터 제64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이전의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절차에서 조달절차의 공식적 요건에 따라 입찰을 제출했던 입찰참가자 모두 또는 그들만을 절차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약공고를 하는 것이 요청되지 않는다.

특히, 조달문서와 부합하지 않는 입찰서, 늦게 제출된 입찰서, 담합이나 부패의 증거가 있는 입찰서, 발주청에 의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 입찰서는 비정상적인(irregular)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의해서 제출된 입찰서와 조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고 문서화된 발주청의 예산을 넘는 입찰가격을 적어 낸 입찰서는 수용불가능한(unacceptable) 것으로 여겨진다.

⑤ 경쟁입찰절차에의 참가초청은 제59조에 따라 계약공고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이 제한경쟁입찰이나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에 의해서 낙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1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이들의 특정범주는 경쟁입찰절차에의 참가초청은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전정보공고(prior information notice)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입찰에의 초청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전정보공고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전정보공고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제54조에 따라 참여의사 확정초청(invitation to confirm interest)의 방식으로 문서로 자신의 참여의사를 확정하도록 초청된다.

⑥ 제32조에서 명시한 특정한 사례와 상황의 경우, 회원국들은 발주청들이 경쟁입찰의 사전공고없이 협상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원국들은 제32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이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청은 낙찰절차를 가장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 더 많은 재량을 갖게 되었음. 입찰참가를 위한 기한이 보다 짧아졌고, 이를 통해서 발주청들이 최대한 탄력성을 갖고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조달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찰참가자격심사단계에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을 대신해서 표준적이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럽단일조달문서(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가 활용됨

- 일반적으로 발주청은 낙찰을 하기 직전에 낙찰예정자에게 실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족함. 이를 위해서 발주청들은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서류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 시장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발주청은 물품, 서비스, 공사들이 조달을 위해서 설정된 환경적, 사회적, 기타 다른 기준들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특정의 라벨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함. 예를 들어 환경라벨이나 공정무역라벨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함

○ 일반경쟁입찰(open procedure)에서 발주청은 절차진행순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가능함. 통상적인 절차대로 우선 입찰을 평가하고 낙찰을 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함. 즉, 우선 입찰내용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나중에 입찰참가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

- 발주청은 만약 입찰참가자가 과거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계약위반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입찰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발주청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배정된 인력이 이행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인력의 자격과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 새로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범주의 발주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청(sub-central contracting authorities)에게는 '간소화된 공고시스템'(simplified publication system)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하한선 이상의 각각의 계약에 대해서 EU 전체를 상대로 계약 공고를 하는 대신에, 단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정보공고(prior information notice)만을 하면 족함. 즉, 계약이 추가로 계약 공고가 없이 낙찰이 될 예정이라는 점, 사업자는 이 절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계약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담으면 됨. 이러한 절차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낙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탄력성을 갖도록 해줌

○ 새로운 지침은 발주청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앙조달기관을 통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매물량을 결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었음. 이러한 구매물량의 결합은 단일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에 속한 행정청간에도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
| - 이처럼 국경을 넘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단일시장의 최대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달의 성과를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지적되고 있음. 새로운 지침은 처음으로 국경을 넘은 공동구매에 대한 명시적이고도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중앙조달기관이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자료: 한국조달연구원, EU조달지침 개정이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조달청, 2014.12, pp.46~53)

# 제3장 자체발주기관 입찰의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 역할 검토

# 1. 경쟁제한행위 대응을 위한 조달청 사전검토 업무 수행의 필요성

## 가. 현행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한계성

○ 현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5일간(긴급시 3일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그러나 2018년 12월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사전규격공개의 업체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발주기관 대응이 총 378건 이루어졌는데, 업체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수용·부분수용 비중은 전체의 29%인 110건 정도에 머무르고, 수용불가는 전체의 27%인 105건이었고, 미답변도 전체의 31%인 158건에 이르렀음

<2018.12.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에 대한 발주처 대응 현황>

| 답변유형 | 사전규격공개(2018.12) | | 합계(%) |
|---|---|---|---|
| | 물품 | 용역 | |
| ▶ 수용 | 31 | 58 | 89(23.5) |
| ▶ 일부수용 | 4 | 17 | 21(5.6) |
| ▶ 수용불가 | 46 | 59 | 105(27.8) |
| ▶ 미답변 | 83 | 75 | 158(41.8) |
| ▶ 기타 (유선 협의 등) | 3 | 2 | 5(1.3) |
| 합계 | 167 | 211 | 378(1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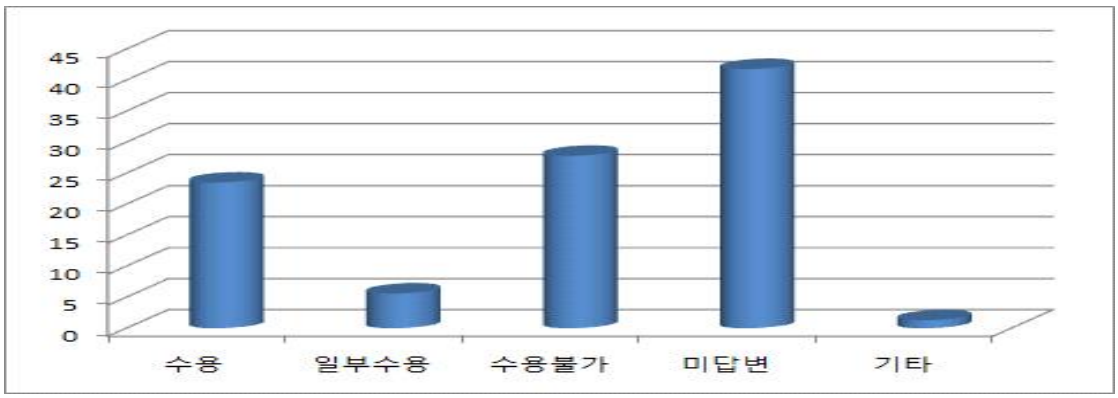

○ 수요기관에 의해 조달 요청되어 조달청이 시행하는 조달절차의 경우, 입찰내용을 단순히 공지하는 형태의 자체조달기관의 “사전규격공개” 절차와 달리, 조달청 내부 규정(예: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통해 “규격검토”, “경쟁제한 내용 검토” 등 구체적 입찰내용의 모니터링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되고 있음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중 사전검토 내용>**

**제21조(조달요청서 검토)**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매결의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수량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때

.....

5.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
6.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이 재활용품과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 또는 국산 신기술 개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할 때

.....

8. 기타 수요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

④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 이와 같은 조달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확대 적용하여, 자체조달 발주처의 이의제기 불수용 조치에 대해 업체 측이 불복하여 조달청에 심사를 요청하거나, 조달청의 사전규격공개 의견에 대한 직권 심사를 거쳐 선별된 경쟁제한요소를 발주기관에 통보 및 협의 요청 체계 마련 필요 (추가적 법적 근거가 필요해 후술하는 법제 개선 부분에서 상세히 서술함)

## 나. 경쟁제한 입찰내용 관리에 대한 조달청의 전문성 활용 필요

○ 주요 경쟁제한적 요소는 다양한 물품입찰의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와 용역입찰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정보에 산재되어 있음

(사례) **제안 요청서**에 특정상표(Core i5-7400, Intel Xeon Quad Core 등)를 명기하여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 특정상표의 삭제를 요청한 사례

(사례) **규격서**에 기재된 규격사항 : 측정기기 통신규격 업그레이드 항목은 특정규격으로 판단됨. 물품규격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입찰의 경우 발주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협약체결도 되어 있지 않고 특정규격이 일부가 아니라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요청한 사례

○ 이러한 입찰정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적요구, 특정 인증 및 규격요구의 적절성, 합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관련 품목 및 업종에 대한 실무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됨

○ 물품, 용역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품목과 업종의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추후 관련 통계 보충 예정), 아래 조직도에서 보듯 본청과 지방청의 실무 물품, 용역 입찰 및 계약 지식과 경험이 숙련된 인력풀을 통해 경쟁제한 사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실무 조직도>

## 다. 업계의 자생적 경쟁제한행위 스크린 활동의 제도화 필요

○ 다양한 (업종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 및 계약의 부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업계의 자생적 입찰 경쟁제한 스크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제한적 요소로 인한 불공정상황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업계의 합리적 시장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표> 다양한 기관의 현행 공공사업 입찰 및 계약 불공정 모니터링 사례

| 사업 분야 | 입찰모니터링 주체 |
|---|---|
| 전시·행사대행사업 | 한국PCO협회 |
| 소프트웨어사업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업무 위탁, 예산사업(연간 4.5억원 / 전문위원 4인이 검토 업무 수행) |
| 정보보호사업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사업 모니터링센터 |
| ICT 장비구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공부문 ICT 장비 발주 모니터링 상담센터 |

<그림> 공공부문 ICT 장비 발주 모니터링 사례

| 프로세스 | 내 용 |
|---|---|
| 1) RFI 검색 |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자체 발주사이트에 등록된 사전규격서(RFI)를 일별로 검색 |
| 2) 목록 작성 및 배분 | ➡ 수집된 사업을 관리목록에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배분 |
| 3) 불공정여부 확인 | ➡ 불공정 여부 검토 및 확인<br>➡ 권고안내문 작성, 등록 및 관리 |
| 4) 회신 확인 |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자체발주 사이트에서 권고의견에 대한 회신 확인<br>➡ 메일 등을 통한 회신 확인 |
| 5) 심의위원회 결과 확인 | ➡ 등록된 의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여부 및 결과 확인 |
| 6) RFP 반영 여부 확인 | ➡ 등록된 의견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결과가 RFP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 7) 통계작성 및 보고 | ➡ 모니터링 결과 취합 및 통계 자료 관리<br>➡ 주간·월간·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RFI(Request For Information) : 구매규격서, 사전규격서
※ RFP(Request For Proposal) : 제안요청서

○ 이미 자체 입찰 모니터링 기관과 조달청은 경쟁제한적 관행 시정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공공시장 경쟁제고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보호사업, ICT장비구매, 전시·행사대행사업 등 시장규모와 관련 협회 등 회원사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업역도 있지만 기타 다양한 중소기업 공급업계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 입찰 모니터링을 시행할 기반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후자의 업역에 대한 조달청의 집중적 사전검토 역할 또한 요구됨

## 2. 경쟁제한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선별 기준(안)

### 가.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대응을 위한 근거 법제 개선안

○ 현행 조달사업법에서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대상을 ‘수요물자 조달과정’이라고 하여 수요물자에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수요물자라 함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조달사업법 제9조의 3 제1항, 제2조 제2호, 조달사업법시행령 제2조), 위와 같은 조달사업법의 규정을 보면 조달청이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입찰경쟁성 관리 및 검토가 가능함

○ 조달청의 중앙조달 사전검토 절차를 확대 적용하여, 자체조달이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규격공개 또는 입찰공고 한 내용에 대해 조달청이 경쟁제한적 입찰내용에 대한 심사 및 발주기관 시정 요청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구체적 입법 개선안으로는 다음과 같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개정방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함) 개정방안, 기타 『정부조직법』에 따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1) 제1안: 조달사업법 개정안

○ 조달사업법 제제9조의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조문과 연계하여, 새로이 조달청의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입찰 경쟁성·공정성 관리 권한을 추가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고려할 수 있음

**<조달사업법 개정 방안 예시>**

| 현 행 | 개정안 |
|---|---|
| <신설> | <조달사업법 제9조의4 신설>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제9조의4(자체발주기관의 경쟁제한적 조달행위 검토) ① 조달청장은 자체 조달을 실시하는 발주기관 중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관련 행위(이하 “경쟁제한 발주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체 조달 발주기관에게 경쟁제한 발주행위의 시정이나 입찰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br><br>1. 입찰공고·특수조건에 특정 규격이나 특정 특허 제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br>2.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비추어 과도한 납품실적을 요구하거나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br>3. 입찰참가자격이나 필요 인증사항을 법령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br>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경우<br>5. 기타 경쟁제한적 입찰 및 계약행위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경우<br><br>② 제1항의 검토 및 시정·입찰절차 중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대통통령으로 정한다. |

- 제1안의 장점은 조달청이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자체조달 기관의 입찰 건에 대해 경쟁제한 억제 및 공정성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획득하게 하는 실무적이고 현실적 법적 체계로 가장 적합한 법령이 “조달사업법”이라는 점임(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관련 내용 포함 시 지방계약법과 관계에서 적용범위의 한계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제1안의 단점은 조달사업법 제1조의 목적 조문이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는 바, 조달사업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체조달 기관의 입찰업무 중 일부를 검토·시정요청·입찰절차 중지 등의 내용을 동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가능하다는 점임

### 2) 제2안: 전자조달법 개정안

○ 현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함) 제19조와 제20조는 각각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불어 자체조달을 실시한 기관도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수의계약 공고 등을 행한 경우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입법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현행 전자조달법상 금지 행위 내용 >**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br><br>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br>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구체적 전자조달법 개정 예시는 다음과 같음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한 타기관 자체조달건 조사 근거 마련 방안 >**

| 현 행 | 개정안 |
|---|---|
| <신설> | 제00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조달공고에 대한 경쟁제한행위 조사)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공고하거나 조달업무내용을 게재한 건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공고내용을 게재한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2안의 장점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내용에 관해서는 동 시스템 관리기관인 조달청이 직접 조달행정행위를 행하지 않는 자체조달기관의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내용일지라도, 부적정성·불공정성 관리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논리와 체계적으로 정합된 입법이 전자조달법 개정 방안임

- 다만, 제2안의 단점은 전자조달법의 목적 및 내용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청이 자체조달의 입찰건에 대해 경쟁제한 억제 및 공정성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하는데 실체적 내용을 전자조달사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점임

### 3) 제3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안

○ 현행「정부조직법」제6조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관련 대통령령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제6조>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자체조달기관의 조달행정 감시·감독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대민관련 업무 등에 따른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 제고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

하급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나뉘어져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부처 고유기능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권한의 위탁은 그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 정원, 예산 등의 이관을 수반한다는 점 등에서 행정기관 간 위탁은 용이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9.9.9.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답변 사례)

## 나.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선별 체크리스트 운용

○ 자체조달기관의 경쟁제한행위를 실무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사례 검토 내용을 구체화한 체크리스트의 적용 필요

**<입찰 경쟁제한 행위 체크리스트 개관>**

| 유형 | 체크사항 |
|---|---|
|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 사업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가 |
| | 특정한 면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
| |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
|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가 |
| | 요구 실적 금액이 사업금액 대비 타당한가 |
| | 특정한 기관과 관련된 실적만 인정하지 않는가 |
| **MAS 또는 종합쇼핑몰 불이용**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가 |
| **과도한 인증요구**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인가 |
| | 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가 |
| **부적정한 지역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지역제한 등이 추가 되었는가 |
|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가 |
|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 긴급입찰사유서가 있는가 |
| | 긴급입찰사유가 타당한가 |
| **수의계약 남용** |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인가 |
| | 대체대용품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과도한 인력요구** | 사업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 자격조건인가 |
| | 요구 인력수가 사업규모 대비 적정한가 |
| | 요구 인력의 경력 및 기술등급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적정한가 |
| **특정규격 요구** | 특정제품에 국한되는 기능이지 않은가 |
| | 표준(공통)규격으로 작성되었는가 |
| | 특정업체의 규격을 연상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
|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는가 |
| |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수급이 제한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
| | 공동수급 업체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 사업내용에 비추어 입찰방식이 적정한가 |
|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 평가항목이 적정한가 |
| | 평가배점이 적정한가 |
| **부적정한 평가배점 및 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식이 적정한가 |
|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 |
| | 민간실적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가 |
| **학력사항 표기** | 수행인력의 학력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가 |
| **통합발주** |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입찰인가 |
| | 관련 법령이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가 |

## <입찰 경쟁제한 행위 체크리스트 개관> (안) (16개 분야, 33개 항목)>

| 유형 | 체크사항 |
|---|---|
|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 **사업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가**<br>(ex. 상하수도 기계장치 설치 공사에 “기계설비업공사” 면허로 제한한 사례→“기계설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 |
| | **특정한 면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br>(ex. 영상프로젝터장비 구매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소지자”만 입찰토록 한 사례→해당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사업) |
| |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br>(ex. 배정예산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중소기업으로 자격확대) |
|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가**<br>(ex.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3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수요기관이 실적평가를 위한 유사실적을 요구하고 있음) |
| | **요구 실적 금액이 사업금액 대비 타당한가**<br>(ex. 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 기준 금액은 사업금액과 비슷하거나 사업금액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으로 2편을 제작해야 하는 사업에서 편당 제작비용은 4,250만원 정도 임에도 수행실적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요구한 사례) |
| | **특정한 기관과 관련된 실적만 인정하지 않는가**<br>(ex. 수행실적을 특정한 기관이나 정부 등 공공기관 관련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MAS 또는 종합쇼핑몰 불이용**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가**<br>(ex. 스토리지, 운영단말 등은 우리 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 등재되어 있으므로 수요물품의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 확인 요청한 사례) |
| **과도한 인증요구**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인가**<br>(ex. 전광판 구매입찰에서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이면서 전광판 직접생산증명서를 갖춘 업체일 것 이외에 ISO9001, ISO14001 인증 요구→인증 삭제) |
| | **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가**<br>(ex. 미국냉각기술협회(CTI)의 성능인증품 또는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 후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례→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KS인증, 환경표지인증, 재활용인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신기술 인증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부적정한 지역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지역제한 등이 추가 되었는가** |

| | |
|---|---|
| | (ex.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에도 지역제한을 한 사례→협상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진하는 계약방법으로, 전문성·기술성 등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등의 제한은 협상계약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 |
|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가**<br>(ex. 제작 업체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로 제한한 사례→인천광역시(납품지 기준)로 지역제한 가능하나, 모자이크타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가 1업체로 조회되므로 지역제한 불가)<br>※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 **긴급입찰사유서가 있는가**<br>(ex. 긴급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공고기간이 단축되어야 하는 사유)를 국가계약법상의 긴급입찰사유에 맞게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긴급요청 시에는 관련 근거 자료(계약서, 공고서 등)를 제시하도록 요청한 사례)** |
| | **긴급입찰사유가 타당한가**<br>(ex.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요청한 긴급입찰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의 달성을 위한 컨설팅 결과 도출을 위해 긴급입찰의 필요성을 기재, 그러나, 긴급입찰 집행의 결정은 긴급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여부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유가 상기 법령상 근거와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br>따라서 귀 기관 긴급입찰사유서 기재내용 만으로는 다른 국가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조정의 불가피성, 긴급한 (국가적)행사 등을 위한 필요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일반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사례 |
| **수의계약 남용** |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인가**<br>(e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또한 해당 수의계약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기 조달된 제품과 호환성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 |
| | **대체대용품 유무를 확인하였는가**<br>(ex.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사목에 의건 특허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대체대용품 유무 및 본 특허 제품 |

| | |
|---|---|
| | 이 아니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검토하도록 한 사례) |
| 과도한 인력요구 | **사업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 자격조건인가**<br>(ex. 지진계측시스템 책임기술자 요건<br>1. 일반적으로 지진계측시스템의 입찰조건은 대상구조물에 따라 토질 및 지질, 구조분야로 나뉘며 그에 따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평가되는데, 부수적인 요소인 정보통신 공사업의 특급기술자 조건을 명시한 사례) |
| | **요구 인력수가 사업규모 대비 적정한가**<br>(ex. 제안서 평가기준 정량 평가부분(제안요청서 11페이지)의 외국어 가능 인력 총 인원수 배점에 본 사업의 과업량과 사업비 대비 너무 많은 인원수를 요구→외국어 가능 인력 총 인원수에 대한 심사항목을 삭제한 사례) |
| | **요구 인력의 경력 및 기술등급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적정한가**<br>(ex. 개인정보 영향평가 총괄은 해당 법인의 상근인원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 10년 이상 전문성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유사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실태점검 수행 경험 및 이에 준하는 능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1) 개인정보영향평가사(PIA) 자격의 시행은 2012년도이므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br>2)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이 2014년도 부터이므로, 개인정보보호 유사실적 10년 보다는 개인정보영향평가만 3년 이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사례) |
| 특정규격 요구 | **특정제품에 국한되는 기능이지 않은가**<br>(ex. 보안솔루션에서 상당부분의 솔루션이 특정업체에 국한되는 기능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공통스펙으로 수정 요청→수요기관이 이를 수용한 사례) |
| | **표준(공통)규격으로 작성되었는가**<br>(ex.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 제4항 제5호에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공고나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쟁이 가능한 공통규격으로 수정하거나,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동 규격이 경쟁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규격비교표, 견적서(세부규격 포함) 등)를 첨부하도록 한 사례) |
| | **특정업체의 규격을 연상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br>(ex. 규격서(시방서. 도면) 내용에 일부분이 특정회사의 특허. 실용신안 및 보유 자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수요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시방서를 일반규격화 한 사례) |
|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는가**<br>(ex. 입찰응모자격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중 1개 이상/ 단독(공동계약 불가) → 건축, 조경, 도시 등 전문분야와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학술연구 등)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 또는 분담 |

| | |
|---|---|
| | 이행방식 허용 건의→ 수요기관 검토) |
| |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수급이 제한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br>(ex. 1.과업지시서_황해 해파리 모니터링 중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항목상 가.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에 대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동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 수요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공동수급 허용으로 수정한 사례 |
| | **공동수급 업체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br>(ex. 공동수급업체의 수를 3개 이하로 한정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5인 이하(±20%)'의 범위 내로 제한할 것으로 조달청이 수정을 요청한 사례) |
|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 **사업내용에 비추어 입찰방식이 적정한가**<br>(ex. 규격가격동시입찰 건에 대해 조달청이 규격가격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나 현 요청 건은 규격이 비교적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사유도 미비하며, 납품가능한 업체가 다수 있는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법 변경 검토 요청한 사례) |
|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 **평가항목이 적정한가**<br>(ex. (제안요청서 p8) 기술인력 >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입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할 때 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로만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자의 전문성을 평가(PM의 수업수행 경력)하는 항목 삭제 요청) |
| | **평가배점이 적정한가**<br>(ex.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br>2. 수행실적(3점)<br>3. 경영상태(3점)<br>4. 기술개발실적(4점)<br>5. 신인도 :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비율(4점) 로 설정한 입찰에 대해 조달청이 재검토 및 평가항목 삭제를 요청한 사례) |
| **부적정한 평가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식이 적정한가**<br>(ex. o 제안평가 방식 : 현실공간(off-line)에서 진행<br>입찰에 대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의견→ 대부분의 수요기관 불수용) |
|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br>(ex. 수행실적 인정범위를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역시설은 100%인정, 기타 1,2종 건축물은 80%인정하고 있는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면 강서시장 청과물동(일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적 및 유사 실적은 80%밖에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업체 유사 용역수행실적평가 시 기타 일반시설물 |

| | |
|---|---|
| | 도 100%인정되도록 재검토→ 수요기관 수용) |
| | **민간실적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가**<br>(ex. p8~9.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실적만 인정→특정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 배제는 불가하므로 민간실적까지 모두 인정하도록 수정 요청한 사례) |
| **학력사항 표기** | **수행인력의 학력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가**<br>(ex. 학력사항 표기 → ○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이 학력 철폐에 역주행하면서, 관행적으로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불필요한 학력기재 요구사항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시행<br>* 과업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학력사항인 경우 사유서를 송부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삭제 |
| **통합발주** |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입찰인가**<br>(ex.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건의 경우 분리발주가 원칙이오니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 |
| | **관련 법령이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가**<br>(ex.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발주 검토를 요청한 사례) |

## 3. 경쟁성 모니터링 및 심사 업무를 위한 필요 조직/인력 검토안

### 가. 조달청 내 조직 신설((가칭) 조달경쟁조사과) 방안

○ **(주요업무)**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의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 업무 수행

**< 조직 : 1과 10명 >**
**- 과장 1,**
**물품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조사 및 모니터링(조사1계) 2,**
**용역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조사2계) 3,**
**시설공사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조사3계) 2,**
**신고접수 및 발주기관 시정 권고 등 사후 관리 2**

- 물품/용역/시설공사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조사 및 모니터링

* 물품/용역/시설공사 **중** 사회적 이슈 대상 품목/업종으로,
('18년 기준) **물품 5,400여건, 용역 17,000여건, 시설공사 12,000여건**
→ **향후 모니터링 대상 물품/용역/시설공사 지속적으로 확대**
(물품은 품목의 다양성과 복잡성 반영한 담당 인원 배치 산정 필요)

<경쟁제한적 입찰 관련 보도/국감 지적 품목/업종 사례>

<불법 수의계약 사례>

| | |
|---|---|
| 기관 |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2018년도 환경부 종합감사) |
| 요청내용 |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7일 대전지방조달청(조달청)에 조달 요청<br>'㈜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 |
| 조달청 의견 | 조달청도 회신 공문을 통해 공단이 보내온 시방서와 수의계약 사유인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이 맞지 않으니 시방서와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을 비교표로 만들어 보내도록 하고, 해당 규격이 다를 경우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한 성능인증제품이 전체 금액의 50% 밖에 안되니 다른 물품은 분리발주토록 함 |
| 결과 | 이후 공단은 11월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 |

| | |
|---|---|
| | 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였음.<br>특히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 중 공단이 요구하는 COD, T-N, T-P 재현성 등을 ±2% 이내로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은 '㈜ㅇㅇ'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정적한 행위를 한 것으로, 즉 조달청이 지적한대로 실제 구매 요청 규격(시방서)과 인증서의 규격이 달라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항임.<br>또한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 결국 지난해 11월27일 환경공단과 '㈜ㅇㅇ' 간의 수의계약이 체결. |

- 출처 : 환경미디어 2019.10.15. 보도

<특정제품 구매>

| |
|---|
| 국가와 공공기관, 국책연구원 등이 상품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나라장터'의 **PC입찰** 공고 100건 중 76건이 '인텔'을 특정해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기업명이나 제품명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행위는 불공정 조달을 조장할 수 있어 정부 계약규칙상 금지하고 있음.<br><br>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장터에 공고된 최근 PC입찰 공고 100건 중 △인텔 CPU를 사용할 것을 명시한 공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텔 동급이상 가능'을 명시한 공고가 13건 △규격 명시 없는 공고가 9건 △AMD 제품을 납품 요구한 공고가 2건이었음.<br><br>특정기업 및 특정제품만 요구하는 입찰공고는 PC 이외의 제품에서도 빈번함. **모니터 텔레비전 캠코더** 등의 입찰공고에서 델·엘지·삼성·파나소닉 등 대기업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명시한 공고가 다수 발견. 구체적인 제품명 및 관련 사진까지 첨부해 노골적으로 명시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출처 : 부산일보 2019.10.11. 보도

| | |
|---|---|
| 기관 | 안성시(경기신문 2019.4.23. 보도) |
| 요청내용 | '안성남사당 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입찰 |
| 사전규격 공개 의견 | 조달청의 '사전규격 공개'에서 특정제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시방서를 작성했다는 관련업체 의견 후 지금껏 구매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br>시는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규격 공개에서 '시방서 및 주요자재 사양을 만족하려면 특정회사 모델로 예상된다'는 이의신청을 받음. |
| 조달청 의견 | 조달청은 사전규격대로 입찰을 할 경우 '제조사 증명원 및 공급자 증명원, A/S확약서를 일반 입찰자참가업체는 제공 받을 수 없다'며 공정한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안성시에 통보 |
| 결과 | 안성시는 시방서를 수정하고 조달청 의뢰 2개월 후 회신(구매요청)을 함. |

- 출처 : 경기신문 2019.4.23. 보도

<특정제품 구매>

| | |
|---|---|
| 기관 | 한국공공조직은행(감사원 감사, 뉴스1 2018.7.19. 보도) |
| 내용 | 2016년 11월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해 **초저온냉동고** 6대를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총 1억1100만원에 구매.<br>공공조직은행은 규격서에 외부 터치스크린에서 각 인체조직의 보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람 시스템 등 B사가 제조하는 초저온냉동고의 특정 규격을 포함 |
| 조달청 의견 | 서울지방조달청이 특정 규격을 제시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통보 |
| 결과 | 조달청의 통보에도 불구 그대로 입찰을 진행, 공공조직은행은 A사와 B사 2개 업체만을 규격 적합자로 확정했고, 조달청은 이 중 낮은 금액을 투찰한 B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 출처: 뉴스1 2018.7.19. 보도

<특정업체>

| | |
|---|---|
| 기관 | SH공사(세계타임즈 2018.11.10. 보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 |
| 내용 | 지난 4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종합입주관리* 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주관리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한 2015년 이후 발주된 9건의 용역을 **2개 업체가 싹쓸이** 한 것으로 밝혀짐.<br>특히, 2016년부터 2위 업체가 낙찰 받는 일이 3년 연속 발생했는데, 이는 제안요청서 및 용역입찰공고에 담긴 통상적인 낙찰 방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드러남. 2016년 용역 공고 직전 **본부장 방침으로 추가된 기준**에 따르면, SH는 종합입주관리 용역을 2건으로 분리하여 동시에 발주하고, 심사결과 1개 업체가 2건 용역에서 모두 1위를 할 경우 낮은 금액의 용역은 2위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음.<br>지적된 2개 업체는 객관적인 정량평가(용역 실적, 경영상태 등)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주관적인 정성평가(제안내용, 세부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매년 종합 1위, 2위에 이름을 올림. |

- 출처: 세계타임즈 2018.11.10. 보도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관련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입찰공고건 또한 조달청 경쟁제한조사 업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신설조직의 1차적 주요 검토 업무 대상)

자체조달 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로 앞서 선별된 1,042건 관련 품목/업종(1)
+ 보도자료/국감 경쟁제한행위 지적 해당 품목/업종(2)
+ 관련 협회에서의 경쟁제한행위 조사시행 해당 품목/업종(3)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 대상 품목/업종(1차)>

| 구분 | 품목 | 자체조달 계약건수 ('18년) | 계약건수 합계 ('18년) |
|---|---|---|---|
| 물품 | 제진기(1) | 27 | 5,484 |
|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1) | 3 | |
| | 엘리베이터(1) | 282 | |
| | 경관조명(1) | 349 | |
| | 야외운동기구(1) | 40 | |
| | 형광등기구(1) | 51 | |
| | LED 등기구(1) | 10 | |
| | 공기청정기(1) | 200 | |
| | 콘크리트패널(1) | 3 | |
| | 냉각탑(1) | 33 | |
| | 모자이크타일(1) | 214 | |
| | 응집기(1) | 3 | |
| | 슬러지수집기(1) | 60 | |
| | 지진가속도계측기(1) | 5 | |
| | 소동물내시경(1) | 5 | |
| | 안전헬멧(1) | 151 | |
| | 농업용트렉터(1) | 30 | |
| | 자동충전기(1) | 25 | |
| | 공공하수처리시설(2) | 490 | |
| | 데스크톱컴퓨터(2) | 345 | |
| | 모니터(2) | 175 | |
| | 텔레비전(2) | 166 | |
| | 캠코더(2) | 167 | |
| | 무선마이크(2) | 255 | |
| | 초저온냉동고(2) | 56 | |
| | 기타 시약 및 지시약(1) | 1,050 | |
| | 영상감시장치(1) | 861 | |

| | | | |
|---|---|---|---|
| | 실물모형(1) | 364 | |
| | 사무용소프트웨어(3) | 322 | |
| | 컴퓨터서버(1) | 597 | |
| | 배전반(1) | 354 | |
| | 일반검사용시약(1) | 619 | |
| | 백신(1) | 560 | |
| | 태양광발전장치(1) | 142 | |
| | LED실내조명등(1) | 615 | |
| 용역 | 정보통신공사업(3) | 14,570 | 17,236 |
|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3) | 2,666 | |
|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1) | 12,059 | 12,059 |

- 입찰 경쟁제한행위 신고접수 및 발주기관 시정 권고 등 사후 조치

* 사전규격공개 업계의견의 발주처 대응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 접수신고 검토내용 및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시정권고 업무 처리

** 다만, 신고-검토-조치-협의 등의 다양한 업무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상기 초기 집행 인력투입 산정안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나. 자체조달기관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업무 외부위탁 방안

○ **(내용 및 위탁 요건)** 자체조달기관의 입찰 경쟁제한행위를 입찰의 사전규격공개 정보나 업계 신고 등을 통해 접수받아 검토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주요 경쟁제한적 요소는 다양한 물품입찰의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와 용역입찰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정보에 산재되어 있어 입찰정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적요구, 특정 인증 및 규격 요구의 적절성, 합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관련 품목 및 업종에 대한 실무 지식 및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업무 수행이 요구되며, 다음의 사례 참고 필요

○ **(유사사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수발주제도 상담센터에 입찰공고문(사전규격공개) 자료의 적법성·공정성 검토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연간 4.5억원 위탁예산/ 전문위원 4인이 1만여 건의 ICT 용역 입찰공고 검토 업무 수행

○ **(유사사례 2)** 조달청은 전자입찰의 기반이 되는 물품목록화 사업을 입찰을 통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현재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 중)

- 연간 6억 원 위탁예산/ 전문위원 12인이 36만여 건의 물품목록 품명신설, 식별번호부여, 목록최신화, 이미지변경 등 기타 업무 수행

**< 2019년 물품목록사업 위탁 계획 세부 내역>**

(단위 : 건)

| 구 분 | 품명신설 | 식별번호부여 | 목록최신화 | 기타(이미지변경 등) |
|---|---|---|---|---|
|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 계 | 220 | 232,850 | 124,630 | 7,010 |

## <현행 조달청 물품목록화사업 위탁 사례(55개 분야, 12명)>

| 대분류 | 대분류명 | 한국조달연구원 |
|---|---|---|
| 10 | 산동식물및동식물성생산품 | 우효정 |
| 11 | 광물,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 이문석 |
| 12 | 화학제품 | 김아람 |
| 13 | 수지,고무,탄성중합체 | 김아람 |
| 14 | 종이원료및종이제품 | 김아람 |
| 15 | 연료,연료첨가제,윤활유및방부식제 | 김아람 |
| 20 | 광산기계및액세서리 | 김경호 |
| 21 | 농,수,임,축산용기계 | 김경호 |
| 22 | 건축건설기계및보조용품 | 김경호 |
| 23 |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 김경호 |
| 24 |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액세서리및소모품 | 김경호 |
| 25 |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 이기원 |
| 26 | 회전기기및경전기 | 서상욱 |
| 27 | 공구및범용기계 | 김경호 |
| 30 | 건자재 | 이문석(3011~3012, 3014~3019), 김미선(3010, 3013, 3020~3026) |
| 31 | 제조부품 | 서상욱 |
| 32 | 전자부품및소모품 | 주보라 |
| 39 |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 서상욱(3912~3913), 김영태(3910~3911) |
| 40 |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 이기원(4014), 김경호(4010, 4015~4017) |
| 41 |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 우학제 |
| 42 | 의료용기기 | 신은경 |
| 43 |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 주보라(4319, 4321, 4323), 김미선(4320, 4322) |
| 44 | 사무용기기액세서리및용품 | 김영태 |
| 45 |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 주보라 |
| 46 | 공공안전및치안장비 | 서상욱(4610~4616, 4618~4620), 이기원(4617) |
| 47 | 위생장비및용품 | 우학제 |
| 48 |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 우효정 |
| 49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용품및액세서리 | 우효정 |
| 50 | 식음료품및담배제품 | 신은경 |
| 51 | 의약품 | 신은경 |
| 52 | 가정용품및가전제품 | 우효정 |
| 53 |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 김영태 |
| 54 | 시계,보석및원석제품 | 김영태 |
| 55 | 출판물 | 주보라 |
| 56 | 가구및관련제품 | 신은경(5610), 김아람(5611~5613) |
| 60 |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 김아람 |
| 70 | 농업,어업,임업및야생동물관련업 | 이기원 |
| 71 | 광업,석유및가스서비스 | 이기원 |
| 72 | 건물및시설물건설유지보수서비스 | 이기원 |
| 73 | 공산품제조업 | 이기원 |
| 76 | 산업위생관련서비스 | 이기원 |
| 77 | 환경관련서비스 | 이기원 |
| 78 | 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 이기원 |
| 80 | 경영관련서비스 | 이기원 |
| 81 |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 이기원 |
| 82 |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 이기원 |
| 83 | 공공사업및공공부문관련업 | 이기원 |
| 84 | 금융및보험 | 이기원 |
| 85 | 보건서비스 | 이기원 |
| 86 | 교육및훈련서비스 | 이기원 |
| 90 | 여행,음식,숙박및오락관련서비스 | 이기원 |
| 91 | 개인및가정관련서비스 | 이기원 |
| 92 | 국방및치안관련서비스 | 이기원 |
| 93 | 정치및행정서비스 | 이기원 |
| 94 | 조직및등호회 | 이기원 |

○ **(업무위탁 소요 예산(추정치))** 검토대상 공고건수의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업무위탁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 가능

**<업무위탁 소요 예산 (안)>**

| 구분 | 검토 분야 | '18년 검토대상 입찰공고건수 | 필요 인원 | 총소요 인건비 예측치 |
|---|---|---|---|---|
| 1단계 | 물품, 용역, 시설공사 | 1만건 내외 | 4인 | 3.15억원 (유사 NIPA업무 위탁비 70% 적용) |
| 2단계 | | 2만건 내외 | 8인 | 6.3억원 |
| 3단계 | | 3만건 내외 | 12인 | 9.45억원 |

## 4. 소결 : 자체발주 입찰 경쟁제한행위 대응 단기/중·장기 시행계획(안)

### 가. 단기적 대응 방안

#### 1) 주요 관심 업종에 대해 경쟁성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 자체발주 기관이 유사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조달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조달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쟁제한 행위 발생을 최소화

-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 제안요청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발주 실무 가이드 정보 제공 사례 참고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사례>**

〈 가이드 안내 〉


Ⅰ. 일반사항 ····· 9
1. 배경 및 필요성 ····· 11
2. 목적 및 적용범위 ····· 14
3. 관련 法.制度 및 지침 현황 ····· 15

Ⅱ. 가이드 체계 ····· 17
1. 가이드 수립 개요 ····· 19
2. 가이드 구성 체계 ····· 22
3. 용어설명 ····· 23

Ⅲ. 기술환경의 이해 ····· 25
1. ICT 란? ····· 27
가. ICT 개요 ····· 27
나. ICT 기술 적용 동향 ····· 28
2. 국가정책 동향 ····· 30

Ⅳ. ICT장비 규격 요구사항 표준화 ····· 33
1. ICT장비 규격 표준화 개요 ····· 35
가. 표준화 관련 현황 ····· 35
나. ICT장비 규격 표준화 방향 ····· 35
2. ICT장비 규격 표준화 범위 및 대상 ····· 36
가. 규격 표준화 범위 ····· 36
나. 규격 표준화 대상 ····· 37
3. ICT장비 규격 표준화 내역 ····· 39
가. 네트워크 부문 ····· 39
나. 방송장비 부문 ····· 70
다. 컴퓨팅 부문 ····· 73

V.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 ····· 77
1.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 및 절차 ····· 79
가. 제안요청서 체계 ····· 79
나. 제안요청 요구사항 구분 ····· 80
다. 제안요청서 목차 및 작성지침 ····· 81
라. 제안요청서 작성 절차 ····· 84
2.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 87
가. 제안요청서 작성 준비 ····· 87
나. 목표시스템 구성 정의 ····· 88
다. 장비규격 요구사항 작성 요령 ····· 90
라. 장비규격 요구사항 작성 예시 ····· 93
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96
4. 제안요청 안내 작성 방법 ····· 99
VI. 사업자 선정 · 평가 방법 ····· 107
1. 평가 원칙 및 방법 ····· 109
가. 평가 원칙 ····· 109
나. 평가 방법 ····· 109
다. 선정 절차 ····· 110
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 111
가. ICT장비 구매시 기술능력 평가서 예시 ····· 111
나. SW사업과의 통합발주시 평가예시 ····· 113
부 록 ····· 119
A. ICT장비 기능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예) ····· 121
B. ICT 참조모델 ····· 143
C. 참고문헌 ····· 145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3

### 2)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 방안 마련

○ (법규 위반 사항 대응) 계약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임에도 발주기관이 위반하기 쉬운 항목을 나라장터 상에서 제한 또는 팝업 안내를 통해 준수 유도

<공공발주 경쟁제한행위 유형에 대한 나라장터 시스템 대응 예시>

| | |
|---|---|
| ● 입찰자격 관련 | ▶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원) 미만 제조 또는 용역계약 실적제한 적용 금지 / 실적 인정기간(규정상 10년) 준수 |
| | ▶ 부당한 지역제한 :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중복 적용 금지 |
| | ▶ 특정규격 요구 : 발생 빈도 높은 규격 집중 관리 |
| | ▶ 통합발주 : 물품+용역 구매 집중 관리 |

○ (경쟁제한행위 사례 고지) 발주기관이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형별 경쟁제한행위 사례를 나라장터에 고지

## 3) 자체발주기관의 입찰업무 사전컨설팅 제공

○ 감사원은 최근 적극행정 추진시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요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면책을 적용하는 “감사 사전컨설팅제도” 도입 · 운영

<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개관>

가. 사전컨설팅의 개념

·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감사원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 주의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을 신설함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나. 사전 컨설팅 대상 및 절차

(1) 신청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의 교육감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소속기관 등은 먼저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장이 검토를 한 후 감사원에 신청을 할 수 있음

(2) 컨설팅 대상

·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3)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주체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송부함

(4) 검토 및 결과회신

·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 사전컨설팅팀)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중요사안의 경우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자문위원회 논의 시 60일)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하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한 연장 가능

(5)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달청이 자체조달기관의 신청을 받아 입찰진행 내용의 적정성을 컨설팅하는 “입찰업무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4)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협회 등과 협업체계 구축

○ 감사원, 공정위 등과 자체조달기관의 입찰 경쟁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조달청이 선별한 입찰 경쟁제한 사례 및 관련 자료의 공유 필요

○ 자체적으로 입찰 및 계약의 부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업계 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필요

–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업계의 자생적 입찰 경쟁제한 스크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하여 입찰 경쟁제한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자체발주기관 계도 활

동 등을 지원

<표> 다양한 기관의 현행 공공사업 입찰 및 계약 불공정 모니터링 사례

| 사업 분야 | 입찰모니터링 주체 |
|---|---|
| 전시·행사대행사업 | 한국PCO협회 |
| 소프트웨어사업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업무 위탁, 예산사업(연간 4.5억원 / 전문위원 4인이 검토 업무 수행) |
| 정보보호사업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사업 모니터링센터 |
| ICT 장비구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공부문 ICT 장비 발주 모니터링 상담센터 |

## 나. 중·장기적 대응 방안

### 1) 조달 전문성을 활용한 사전 적정성 심사 및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구축

#### ① 조달청내 조직 신설((가칭) 조달경쟁조사과) 또는 전문기관 외주 방안

○ **(조달청내 조직신설 (안))**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의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 업무 수행

**< 조직 : 1과 12명 >**
**- 과장 1,**
**물품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조사 및 모니터링(조사1계) 4,**
**용역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조사2계) 3,**
**시설공사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조사3계) 2,**
**신고접수 및 발주기관 시정 권고 등 사후 관리 2**

- 물품/용역 분야 입찰 경쟁제한행위조사 및 모니터링

* 연간 구매규모가 큰 물품(품목)/용역(업종) **중** 사회적 이슈 대상물품 →

**향후 모니터링 대상 물품/용역 지속적으로 확대**

<2018년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사전규격공개 현황>

(단위: 건)

| 발주구분 | 구분 | 물품 | | 용역 | |
|---|---|---|---|---|---|
| |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중앙조달 | 입찰공고 | 17,567 | 431 | 15,982 | 282 |
| | 사전규격 | 60,176 | 7,143 | 1,261 | 128 |
| 자체조달 | 입찰공고 | 27,302 | 72,187 | 56,464 | 81,535 |
| | 사전규격 | 35,327 | 23,254 | 61,804 | 13,742 |

- 2018년 5천만원 이상의 자체조달 입찰 사전규격공개건수는 물품 3만 5천여건, 용역 6만 1천여건 등 9만 6천여건임

- 또한 2018년 자체조달 품목별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집행 순위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최초 업무는 물품 1만건, 용역 8천건, 시설공사 6천건 정도의 검토업무 처리를 전제로 상기 조직((가칭) 조달경쟁조사과) 인원 산정

○ **(전문기관 업무 위탁(안))** 자체조달기관의 입찰 경쟁제한행위를 입찰의 사전규격공개 정보나 업계 신고 등을 통해 접수받아 검토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주요 경쟁제한적 요소는 다양한 물품입찰의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와 용역입찰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정보에 산재되어 있어 입찰정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적요구, 특정 인증 및 규격 요구의 적절성, 합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관련 품목 및 업종에 대한 실무 지식 및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업무 수행이 요구되며, 다음의 사례 참고 필요

○ **(유사사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수발주제도 상담센터에 입찰공고문(사전규격공개) 자료의 적법성·공정성 검토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연간 4.5억원 위탁예산/ 전문위원 4인이 1만여건의 ICT 용역 입찰공고 검토 업무 수행

○ **(유사사례 2)** 조달청은 전자입찰의 기반이 되는 물품목록화 사업을 입찰을 통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현재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 중)

- 연간 6억원 위탁예산/ 전문위원 12인이 36만여건의 물품목록 품명신설, 식별번호부여, 목록최신화, 이미지변경 등 기타 업무 수행

- 경쟁제한행위 모니터링 업무 전문기관 위탁시 공고건수의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업무위탁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 가능

**<업무위탁 소요 예산 (안)>**

| 구분 | 검토 분야 | '18년 검토대상 입찰공고건수 | 필요 인원 | 총소요 인건비 예측치 |
|---|---|---|---|---|
| 1단계 | 물품, 용역, 시설공사 | 1만건 내외 | 4인 | 3.15억원 (상기 NIPA업무 위탁비 70% 적용) |
| 2단계 | | 2만건 내외 | 8인 | 6.3억원 |
| 3단계 | | 3만건 내외 | 12인 | 9.45억원 |

### ②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개발

○ **(경쟁제한행위 선별 시스템 개발)** 입찰공고서 이외에도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조달정보를 검증하여 경쟁제한 행위를 1차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선별 시스템 구축 후)** 선별 시스템으로 1차 선별된 경쟁제한적 내용을 상기 ①에서 언급한 조달청 내부 신설조직 또는 외부 업무위탁 기관의 적정성 심사

## 2)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 수립 및 운용

○ 조달청의 사전규격공개 관련 이의 조정 결과와 자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조달정보 등을 통한 사전심사 결과를 통해 자체조달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9년 7월 공공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정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아래 표 참조)들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 모델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음

**<공공시설공사 발주자 공정성 평가항목별 중요도 및 평가결과(7점만점)>**

| 분류 | 평가항목 | 중요도 | 현재수준 | Gap |
|---|---|---|---|---|
| 예산·예정가격 관련 평가 | 1.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내역서 작성 | 6.04 | 4.80 | 1.24 |
| | 2. 부당한 삭감 없이 공사비 산정 | 6.07 | 3.90 | 2.17 |
| | 3. 복수예비가격 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 | 5.59 | 5.20 | 0.39 |
|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요율 준수 | 6.04 | 5.89 | 0.15 |
| 입·낙찰 관련 평가 | 5. 부당한 제약·제한 없이 입찰참가 기회 제공 | 5.52 | 4.57 | 0.95 |
| | 6. 적절한 수준 및 분량의 입찰자료 요구 | 5.10 | 4.17 | 0.93 |
| | 7. 입찰과정에서 설계도서 열람의 기회 제공 | 5.88 | 5.14 | 0.74 |
| | 8. 발주자 간섭·강요 없이 하도급자 또는 자재업체의 선정 | 5.32 | 3.74 | 1.58 |
| 부당특약 관련 평가 | 9.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 청구권 보장 | 6.14 | 3.50 | 2.64 |
| | 10. 계약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 적절하게 설정 | 5.85 | 4.42 | 1.43 |
| | 11. 공사 규모에 맞는 숫자의 현장기술자 배치 요구 및 추가 배치를 요구시 노무비 지급 | 5.29 | 3.45 | 1.84 |
| 공사비 지급 관련 평가 | 12. 설계변경에 대한 항목인정 및 단가조정 등을 규정에 준하여 처리 | 6.16 | 4.27 | 1.89 |
| |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 | 6.15 | 5.31 | 0.84 |
| | 1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절하게 조정 | 6.24 | 3.17 | 3.07 |
| 공사비 조정 관련 평가 | 15. 기성 및 준공대가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적정하게 지급 | 6.00 | 4.99 | 1.01 |
| | 16. 발주자 지시에 따른 휴일작업,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 | 5.85 | 3.31 | 2.54 |
| | 17. 계약범위 이외의 추가업무(인허가, 민원, 용지보상등), 추가공사, 특화공사에 따른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 | 5.86 | 3.26 | 2.6 |
| | 18.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기술료 및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지급 | 5.52 | 4.07 | 1.45 |
| 발주자 역할 및 우월적 지위 관련 평가 | 19. 뇌물 요구, 부당 압력, 보복 행위 등이 없이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 | 6.02 | 4.53 | 1.49 |
| | 20. 시공자의 이의신청을 적절하게 대응 | 5.90 | 3.83 | 2.07 |
| | 21.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 클레임을 적절하게 처리 | 6.09 | 3.43 | 2.66 |
| | 22. 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사 지체에 따른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6.11 | 3.26 | 2.85 |
| | 23. 관급 자재의 하자, 누락, 반입 지체에 대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5.83 | 3.59 | 2.24 |
| | 24. 시공자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노조파업 등에 의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 | 5.97 | 3.03 | 2.94 |
| 전체 평균 | | 5.86 | 4.12 | 1.74 |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 모델”, 2019.7.

### 3) 자체발주기관의 발주 경쟁성 평가내용을 경영평가 반영

○ 공기업 등 자체발주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상생·협력 항목에 개별 기관 발주 경쟁성 평가 지표 결과를 반영하는 것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하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분야 반영

# 부 록

# 경쟁제한행위 유형별 사례집

#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 1
2.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5
3. MAS 또는 종합쇼핑몰 불이용 ····· 9
4. 과도한 인증요구 ····· 10
5. 부적정한 지역제한 ····· 12
6.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 14
7. 수의계약 남용 ····· 15
8. 과도한 인력요구 ····· 18
9. 특정규격 요구 ····· 24
10.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 28
11.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 32
12.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 33
13. 부적정한 평가방식 ····· 37
14.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 39
15. 학력사항 표기 ····· 41
16. 통합발주 ····· 42

## 1.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 사업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제한 |
| 등록의견 | 본 하수처리장 무산소조교반기는 하수처리 공정상 중요설비 입니다. 특히 이번 교반기의 경우 수중프로펠러형 교반기를 하이드로포일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문 교반기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이드로포일형은 유체역학 요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br>또한 수중에 임펠러가 입수되어 있는 상하수도 기계장치 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업공사 면허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변경해 주시거나, 기계설비업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귀하께서 사전규격공개 시 의견사항에 대한 자격변경 요청건과 관련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공사설비업을 소지한 업체로 함**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입찰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특정면허 소지자가 아닌 실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
| 등록의견 | 전기공사업 시행령 제2780호(2017.1.26)에 의해서<br>태양광발전은 조달입찰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전기공사업 제2조(전기공사)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로 전기공사업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br>예비발전은 제2조(전기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또한 전기공사업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br>또한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의하였습니다.<br>별첨 내역을 참고하셔서 공고시 전기공사업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당초 전기공사 도급업체에서 비상발전기 전기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는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전규격 공개 의견 접수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공사업을 추가하여 디젤발전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공사를 수행토록하고 도급사와 연계하여 시운전 및 설치를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특정한 면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 | |
|---|---|
| 입찰내용 | 나. 본 공사는 기존 중량물 철거 작업 및 신규 제작 설치 작업이 수반 되어야 함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 함. |
| 등록의견 | 시방서상의 면허조항을 삭제해주시던가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면허도 입찰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 | |
|---|---|
| 답변 | 귀하께서 사전규격공개 시 의견사항으로 요청하신 자격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중 면허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입찰내용 | 입찰참가자격<br>ㅇ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
| 등록의견 | 제시된 공개규격에는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으로 볼 때 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자격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무인도서 관리는 해양의 특성을 많이 반영해야 하므로 해도제작 능력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도제작업을 보유한 업체에게도 참가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 답변 | 문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 보유업체도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안요청서에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 할 계획임 |

| | |
|---|---|
| 입찰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사업자” 면허 소지업체로 제한 |
| 등록의견 | 영상프로젝터장비에 대한 의견으로 정보통신사업자(면허소지업체)만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며,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면, 정보통신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 답변 | 본 계약 건은 단순 물품 설치 요청의 건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br>의견 감사합니다. |

| | |
|---|---|
| 입찰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제진기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진기,세부품목)를 소지한 자」 로 제한 |
| 등록의견 | 제진기 제작설치에 전문적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제진기 제조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한「제진기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진기,세부품목)를 소지한 자」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제진기 제조 및 설치에 충분한 요건으로 판단되며,「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 참가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 | |
|---|---|
| 입찰내용 | 1.17 공급자 납품조건<br>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의하여 녹색기술인증(제GT-15-00126호)을 받은 시스템이어야 한다.<br>5. 시스템 사양<br>중앙관제용 소프트웨어는 GS인증(16-0005), 녹색기술인증(GT-15-00126)을 받은 시스템이어야 한다. |
| 등록의견 | 현 시방서상<br>1.17. 공급자 납품조건<br>조달우수제품 번호(2016122), 녹색기술인증 번호(제GT-15-00126호), GS인증 번호(16-0005) 등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특정번호 지정)으로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자격 완화를 요청합니다.<br>5. 시스템 사양<br>시스템 사양에 특정업체의 조달우수번호, 녹색기술인증번호, GS인증번호 등 여러 업체가 참여가능하도록 삭제 요청합니다. |
| 답변 | 특정번호 삭제요청 처리 |

| | |
|---|---|
| 입찰내용 | ○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서 참조)<b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br>-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한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
| 등록의견 |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디오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영상물 제작을 위한 직접생산증명원,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등이 필수이고, 필요에 따라 조달청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또는 영화제작업(업종코드1236)으로 등록한 자를 간혹 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의 입찰에서 참가자격은 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로 되어 있어, 본 과업이 홍보영상 제작인지 그밖의 매체대행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건지 궁금함과 의문이 듭니다..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매체 및 기타 홍보용역은 없고 홍보동영상 제작만 있던데.. 그렇다면 참가자격 요건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 제작이 주 과업인데 광고대행업 등록된 자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과업범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참가자격에 왜 광고대행업을 넣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의견주신바대로 수요부서와 과업내용 검토 결과 제안서에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 | |
|---|---|
| 입찰내용 | ○ 사업예산 : 194,040천원<br>○「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등록의견 | 제안요청서 내용에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예산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자격확대 수정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수용 |

| | |
|---|---|
| 입찰내용 | ○ 사업예산 : 194,040천원<br>○「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등록의견 | 제안요청서 내용에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예산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자격확대 수정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수용 |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 진행 요청 |
| 업무협의 | 1) 지명경쟁 재검토<br>○ 일반규격 물품을 지명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타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지 못하여 경쟁성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 발생<br>○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성 확대 등을 위하여 가급적 지명경쟁이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방법 변경을 검토<br><br>2) 지명경쟁 요청 시<br>○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2조의 지명경쟁계약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어 지명경쟁 사유 재작성(기관 직인 날인)<br>* '하도급이 불가하고 낙찰 후 공사업체에게 일괄하도급 한다'는 사유로는 지명경쟁 불가 |

## 2.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정량평가 항목<br>- 최근 3년간 소방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
| 업무협의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3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평가가 가능함<br>→ 실적평가 삭제 또는 실적평가가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제시 요청<br>• 수행실적 평가 시 개정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참조하여 평가기준 수정 요청 |

**○ 요구 실적 금액이 사업금액 대비 타당한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최근 5년 이내 7억원 이상의 실적을 요구 |
| 업무협의 | • 실적제한의 경우 제조물품에 한해 제한가능하며, 단일 건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 1/3배 이내에서 요구<br>즉, 입찰참가자격을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4321179601)를 제조로 등록한 자로 제한할 경우, 단일 계약 건으로 추정가격(673,636,360원)의 1/3 범위 내에서 제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 가능) |

| | |
|---|---|
| 입찰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추정가격 0.8배 이상의 승객용엘리베이터(속도 105m/min이상) 제조·설치 실적 보유 업체 |
| 업무협의 | 귀 기관 수요 '엘리베이터'는 안전과 관련된 물품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10억 원 미만에 대하여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실적제한이 가능하나, 속도·분속 등 기타제한은 미적용되오니 검토 후 수정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2. 입찰참가자격 사항의 5)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건 3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경관조명 디자인 설계 또는 제작,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 등록의견 | 이 항목은 경관조명 업체의 기준에서 보면 설계용역이나 제작, 설치에 대한 실적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 보입니다. |

| | |
|---|---|
| 답변 | 해당 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실적 제한에 대한 부분은 전체 사업비 24억원에 비하여 지방계약법 상 제시된 제한 가능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실적제한한 사례가 있어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 특정한 기관과 관련된 실적만 인정하지 않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p8~9.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 교육기관 실적만 인정 |
| 업무협의 | - 특정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 배제는 불가<br>민간실적까지 모두 인정하도록 수정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o 클라우드 분야의 컨설팅 전문성 제시<br>- **2017년 클라우드 컨설팅 수행 실적** 제시(1건 이상)<br>- 클라우드 컨설팅 수행 사례 제시(민간/공공)<br>- 투입인력이 주관사업자 정직원 확인 제시 및 인력의 클라우드 컨설팅 경험 제시 |
| 등록의견 | RFP 클라우드 컨설팅 지원 요구사항 CCA-001 관련하여 확인 요청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거의 대부분의 RFP의 수행 실적은 과거 실적 또는 최근 몇년간의 수행 실적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본 RFP는 특정년도의 실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이 되는 많은 사업자가 제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공정경쟁을 위하여 본 항목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 답변 | RFP 요구사항 CCA-001 관련<br>-2017년 클라우드 컨설팅 수행 실적 제시(1건 이상) 은 지원 자격은 아니며, 제안 기업의 컨설팅 전문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br>다만, 다수의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br>- 최근 3년간 클라우드 컨설팅 수행 실적 제시<br>수행 실적이 없으면 없음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

| | |
|---|---|
| 입찰내용 | 제안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주사업자로 관련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등록의견 | 40페이지의 사전규격의 정량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주사업자로 관련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수행 건수만을 배점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정부기관 및 연구원에서도 극히 일부 기관의 수행 실적으로, 이 조항을 준용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만이 참여 가능함으로써 열정있는 일반 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br>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소 평가 조항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
| 답변 | o 의견내용을 수렴하고 민간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을 **최근3년간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으로 변경하여 일부기관에 국한되지 않도록 수행실적 평가요소를 변경처리 하였습니다.<br>- 수행실적 평가대상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875호)」제9조 제7항 준용 |

| | |
|---|---|
| 입찰내용 | 다. 최근5년 단일건으로 공사금액 10억이상 객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공사 경력 업체 |
| 등록의견 | 다. 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에 많아야 2~3개 업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공고 시 관련내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 | |
|---|---|
| 입찰내용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50㎥/일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 등록의견 | 업지지서의 7. 참가자격 다항과 관련하여 시설용량 50㎥/일 이상으로 제한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나와있는 부분과 상이하고 50㎥/일 이라는 부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잡은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br>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보면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등을 고려해서 3/1이상 1배 범위로 정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등은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이라 할 수 없어 제 생각에는 굳이 시설용량을 제한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1 이내”로 제한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50㎥/일로 제한 한 것은 특정업체들의 특혜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br>아울러, 최근에 진행되었던 나주시, 홍천군, 공주시에서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용역 입찰공고들을 살펴보면 시설용량 또는 규모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공평한 입찰을 진행 하였습니다.<br>참가제한 부분에 “시설용량 또는 규모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목적물 |

| | |
|---|---|
| | 의 규모 또는 양의 3/1이내"로 수정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한 입찰을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
| 답변 |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실적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br>-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실적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군 시설용량(110㎥/일)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나, 기존 50㎥/일이 아닌 30㎥/일을 적용하여 다수의 입찰적격자가 기술능력에 따른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입찰내용 |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안내<br>①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 수행실적 평가(6점) : 최근 3년간 동등이상의 수행 실적만을 합계금액 기준으로 평가함<br>- 동등이상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버 납품, 구축"과 "스토리지 납품, 구축" 사업**을 말하며, PC/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 등록의견 | 수행실적을 지방지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한적인 입찰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
| 답변 |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 포함**<br>- '동등이상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서버 납품, 구축과 스토리지 납품, 구축 사업을 말하며, PC/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 | |
|---|---|
| 입찰내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유사용역 10년)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에서 발주한 준공금액(지분포함) 2억원 이상의 용역중 도시·군기본계획용역(변경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포함) 용역(단, 도시 일부 도시관리계획, 단일 도시계획시설, 단일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역세분은 제외)에 한한다. |
| 등록의견 | 실적 범위가 과하게 묶여 참여 업체가 너무 제한적이라 사료됨.<br>도시관리계획 업무와 유사한 과업을 실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업체들 참여기회를 열어주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 답변 | ○ 참여기술자 실적 : 내실 있는 과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금액(2.1억원)을 적용하여 존치<br>○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용역을 유사용역의 범위에 포함 |

## 3. MAS 또는 종합쇼핑몰 불이용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운동시설물 및 기타놀이기구” 구매 요청 건<br>“스토리지, 운영단말 등” 구매 요청 건 |
| 업무협의 | “운동시설물 및 기타놀이기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이미 다수의 제품이 계약 등재되어 있습니다.<br>→ 종합쇼핑몰 등재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2호 나목에 따라 종합쇼핑몰 등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함 |

| | |
|---|---|
| 입찰내용 | ‘남양주 별내지구 중앙119구조대 헬기장 이전공사 보강토옹벽 구매’ |
| 업무협의 | 해당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2호 가목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계약된 물품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기존규격<br>1.내,외부망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유지하면서 스토리지 Fiberchannel를 통한 망간 데이터 송수신 |
| 등록의견 | 공정한 경쟁 및 다수 제품의 제안 참여를 위해 [중계매체 소켓 디바이스 및 중계 스토리지 방식을 통한 망간 데이터 송수신 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답변 | 조달청에서 종합쇼핑몰(3자단가)에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분할발주 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망연계 솔루션은 분할발주(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 4. 과도한 인증요구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인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제안요청서 p37)<br>~국내용/국제용 CC인증을 필히 득해야 하며~ |
| 업무협의 |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내용 CC인증과 국제용 CC인증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수정 요청 |

| | |
|---|---|
| 입찰내용 | KS인증서(KSD 6008)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 |
| 업무협의 | KS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KS인증서 보유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나, KS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은 구매 물품이 아니어서 제한할 수 없으므로 KS인증서 제한사항 삭제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1) 국제표준규격 공인기관으로부터 ISO9001, ISO14001을 획득한 전광판 제조업체 |
| 등록의견 | 입찰 설치자 자격이 본사업 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로 다수의 입찰 참가 불가능<br>→ ISO9001, ISO14001 삭제 요청<br>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이면서 전광판 직접생산증명서를 갖춘 업체이면 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 의견주신 입찰참가자격 중 ISO인증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 |

| | |
|---|---|
| 입찰내용 | 규격 내용: “CA인증 제품” |
| 등록의견 | 규격내용 중 CA인증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첨부한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지침 수정통보(노인정책과-3697호)를 보면 CA인증제품 이외 성능이 우수한제품 등 보급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인증을 제외하시고, 필수 인증인 KC채택을 요청합니다. 성능의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인증 시 받게 되는 각 항목(청정화면적, 소음도, 헤파등급 등)은 국가 인증기관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니, 그 점 검토 후 적용 바랍니다. |
| 답변 | [의견일부수용]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인 KC, KS 또는 공기청정기협회의 인증인 CA인증 중 하나를 득한 제품으로 수정 계획 |

| | |
|---|---|
| 입찰내용 | 1.5.1.3 생산자 및 시공자의 규정<br>(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br>2.1.2 물리적 성질 :ASTM 규정을 적용 |
| 등록의견 | 복합패널 시방서 1.5.1.3 (1)생산자에 iso 9001 인증업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금속제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들 중 iso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상황임.<br>복합패널 시방서 2.1.2 물리적성질의 항목을 굳이 해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내 알루미늄복합패널에 대한 ks인 ks f 4737이 있기 때문에 ks로 규정하여도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
| 답변 |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br>1.생산자에 iso 9001 인증업체 규정은 삭제합니다.<br>2.국내 기준(KS F 4737)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 | |
|---|---|
| 입찰내용 | ❍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 요구 |
| 등록의견 | ○ 1. 의견 내용에 기술한 사항을 보면 크게 CC인증 획득 제품 혹은 입찰공고일 기준 인증 심사 중인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br><br>○ 인증 규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요구사항과 같이 입찰 공고일 기준 인증 심사 중인 제품으로 확대해 주셔서 보다 많은 IT제조사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 답변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차후 통합연계, 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함 |

**○ 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가**

| | |
|---|---|
| 입찰내용 | Ⅲ. 기자재 시방서-제1장 기자재 시방서-<br>1. 냉각탑 교체시방서-1.6 시험 및 검사<br>3) 미국냉각기술협회(CTI)의 성능인증품 또는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 후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업무협의 | ○ CTI인증 제품 또는 KARSE 인증제품을 납품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 불가<br>- 규격서에 명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인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KS인증, 환경표지인증, 재활용인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신기술 인증에 한함 |

## 5. 부적정한 지역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지역제한 등이 추가 되었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2. 입찰 참가자격<br>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따라 입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업무협의 | 제한입찰(지역제한 : 추정가격 3.2억원 미만)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에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입찰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참조) 이며, 귀 제안요청서(p.2)에 상주 유지보수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격에서 삭제바람 |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전라남도 내 업체로 지역제한 |
| 업무협의 | 지역제한을 할 경우 펌프 제조업체수가 8개 업체로 한정되므로 지역제한 재검토 요청 |

| | |
|---|---|
| 입찰내용 | 제작 업체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
| 업무협의 | 인천광역시(납품지 기준)로 지역제한 가능하나, 모자이크타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가 1업체로 조회되므로 지역제한 불가<br>※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 | |
|---|---|
| 입찰내용 | ❍ 경기도 지역제한 |
| 업무협의 | ❍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경기도 내 업체 167개사 중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는 8개사로 과도한 참가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 |

○ 기타

| | |
|---|---|
| 입찰내용 | 6. 입찰 참가 자격<br>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
| 등록의견 | 요청 : 공정거래를 위하여 입찰참가제한 관할지역제한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경상북도, 대구 본사/지사 허용 |
| 답변 | 수용불가<br>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지를 대구, 경북만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함 |

| | |
|---|---|
| 입찰내용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 소재 업체로 제한 |
| 업무협의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로 제한하거나 지역제한 없이 진행해야 하므로 재검토 요청 |

## 6. 부적정한 입찰기간 단축

○ **긴급입찰사유서가 있는가**

**<구매업무 협의>**

| 입찰내용 | 긴급공고로 입찰기간 단축 요청 |
|---|---|
| 업무협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입찰공고가 가능하므로 긴급입찰 대상 여부에 대해 재검토 요청<br><br>* 긴급입찰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 명시하여 긴급입찰사유서 첨부 |

| 입찰내용 | 긴급공고로 긴급입찰사유서를 첨부하여 입찰기간 단축 요청 |
|---|---|
| 업무협의 | ▶ 붙임의 긴급입찰사유서 서식을 참조하여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공고기간이 단축되어야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국가계약법상의 긴급입찰사유와 맞지 아니할 경우 긴급입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급하다거나, 유지보수 기한이 지났다거나 하는 사유는 긴급입찰사유에 맞지 않습니다. 법령상에 맞는 내용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긴급입찰 시 공고기간 : 25일 |

○ **긴급입찰사유가 타당한가**

**<구매업무 협의>**

| 입찰내용 | 긴급공고로 긴급입찰사유서를 첨부하여 입찰기간 단축 요청 |
|---|---|
| 업무협의 | □ 귀 기관이 기재한 긴급입찰사유 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령 관련규정(제35조)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입찰을 긴급입찰로 집행하기 곤란합니다.<br>○ 귀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의 달성을 위한 컨설팅 결과 도출을 위해 긴급입찰의 필요성을 기재<br>○ 그러나, 긴급입찰 집행의 결정은 긴급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여부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br>- 동 사유가 상기 법령상 근거와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br>○ 귀 기관 긴급입찰사유서 기재내용 만으로는 다른 국가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조정의 불가피성, 긴급한 (국가적)행사 등을 위한 필요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br>- 이에 따라, 일반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br>□ 다만, 귀 기관에서 긴급입찰사유에 누락시킨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작성하여 송부해 주기 바라며,<br>○ 만약, 추가 기재(또는 재작성)후 송부할 경우, 긴급입찰 여부는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 |

## 7. 수의계약 남용

○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인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 |
| 업무협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br>또한 해당 수의계약 대상 업체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기 조달된 제품과 호환성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함<br>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를 재검토하여 대체대용품 유무여부, 기 조달물품과의 호환성 여부 등을 재검토 후 회신 |

| | |
|---|---|
| 입찰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요청 |
| 업무협의 | 조달요청 서류를 보면 수요기관에서 2개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두 개사의 자체 평가 점수도 3점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 |

○ 대체대용품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제2정수장 응집기 제작 및 구매설치”에 대하여 성능인증제품(22-138호)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요청 |
| 업무협의 | ○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규격이 성능인증 제품의 규격과 일치하여야만 성능인증 제품으로 인정되어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 가능<br>○ 따라서 구매 규격(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과 성능인증 제품 규격(성능인증 규격서)의 일치 여부를 검토(필요시 중소기업청에 확인)하신 후 첨부된 서식에 따라 비교표를 작성 및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첨부<br>○ 규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구매 규격(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보완 |

| | |
|---|---|
| 입찰내용 | “석수하수처리장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구입교체”건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거 특허등록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 |
| 업무협의 |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수의계약 대상제품에 대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한 제품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대체•대용품의 유무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명백한 사유로 대체•대용품이 없어 특허등록 등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수의계약 구매추진을 반드시 원할 경우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선정사유 보완, 대체•대용품 유무 검토 결과(타제품과의 성능 비교표, 내외부 심의회, 경진대회를 통한 선정결과 보고서 등)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검토 후 경쟁계약으로 변경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반규격으로 보완하여 회신 |

| | |
|---|---|
| 입찰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이미 조달된 물품과의 호환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 |
| 업무협의 | - 동 품목 간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한 경우를 감사 지적한 사례가 있는 바,<br>- 본 사업의 대체·대용품 존재 여부 재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양주신천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섬유디스크필터 여과설비는 2010.1. 유천엔바이로(주)가 신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자 한화, 양주엔바이로(주)에 조달 공급한 설비로써 기 조달된 물품의 성능보증 및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교환 등 호환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요청함 |
| 등록의견 | 1. 테스트 방법<br>- 섬유 디스크필터의 여과 원리는 유입원수가 옆에서 옆 방향으로(횡형류) 투과하면서 공극에 의한 체거름과 눕여져 있는 섬유층의 심층여과 효과로 여과되는 방식임<br>→ 따라서, 사업소에 테스트한 하향류식 여과방식은 섬유 디스크필터의 기본여과 방식(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방법상의 오류가 있음<br><br>2. 테스트 결과<br>- 일반적(상식적)인 여과와 처리효율의 원리(메카니즘)는 동일한 여재와 여과 면적 내에서는 처리량과 처리효율이 반비례인 성향을 가짐.<br>이 경우 유입원수의 투과(여과)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대상 여재의 공극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입원수내의 오염물질(입자)들을 보다 많이 포집하므로(처리효율이 높아) 공극이 여과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임. |

| | |
|---|---|
| | → 따라서, 사업소 테스트 결과는 B제품의 경우 투과(처리) 속도는 느리고 처리효율도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테스트 결과라고 사료됨<br>3. 결론<br>○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의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포 교체를 위한 여과포 선정비교 테스트 방법 및 결과는 방식상에 오류가 있으며, 그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br>○ 양주신천하수처리장 섬유 디스크필터용 섬유여과포 및 자동세척노즐은 국내 대체, 대용품이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 금번 양주신천하수처리장 여과설비 부품 구매·교체 건은 기 조달된 물품의 부품을 교환하는 사업으로 기존제품과 호환성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섬유여과포(특허10-0916320호. 10-1039326호. 10-1581183호) 와 자동세척 노즐(특허 10-1112683호) 등에 관해서는 구매·교체 시방규격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br>따라서 금회 부품 구매·교체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 하수처리장 시험테스트 방법에 대한 답변<br>1. 테스트방법<br>- 테스트 과정에서 충분한 양(2,000mL)의 유입수를 투과하게 되면 여과포는 물에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로 여과되기 때문에 방식(횡형류 및 하향류)과 방향에 관계없이 투과방식은 같은 원리임.<br>- 신천하수처리장 운영사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원수 상태, 여과포 상태, 실험 방법 및 도구) 이루어진 테스트로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음.<br>2. 테스트결과<br>- 처리량과 처리효율이 반비례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진행한 결과 시료의 여과포 통과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통과수 SS 수질평균값도 비교분석 샘플 여과포간 차이가 났습니다 .(SS평균수질 측정값 A시료 6.5mg/L  B시료 7.6mg/L) |

## 8. 과도한 인력요구

**○ 사업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 자격조건인가**

**<구매업무 협의>**

<table>
<tr><td>입찰내용</td><td>○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table>
<tr><th>구분</th><th>주요역할</th><th>자격/경력 조건</th></tr>
<tr><td>시스템 총괄 (1명)</td><td>- 유지보수 총괄(PM)<br>- 네트워크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관리<br>- 과업수행보고서 작성<br>- 비상주</td><td>- 자격 : CCIE(네트워크전문가) 이상<br>- 경력<br>· 기술등급(고급) 이상<br>· 네트워크 분야 최근 5년이상<br>-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일) 제출(제안 시 제출)</td></tr>
<tr><td>보안 시스템 (1명)</td><td>- 보안시스템 운영관리<br>- 상주</td><td>- 자격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br>- 경력<br>· 기술등급(초급) 이상<br>-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일) 제출(제안 시 제출)</td></tr>
<tr><td>네트워크·인터넷전화 시스템 (1명)</td><td>- 인터넷전화시스템 및 전용회선 설비 작업<br>- 구내 MDF, MSPP<br>- 상주</td><td>- 자격 : CCNA이상<br>- 경력<br>· 기술등급(초급) 이상<br>· 네트워크·인터넷전화(CISCO) 관리경력 최근 6개월이상<br>-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일) 제출(제안 시 제출)</td></tr>
</table></td></tr>
<tr><td>업무협의</td><td>▶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격사항'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요구사항으로 가급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배치인력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거나<br>예시)○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 <u>ㅇ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권장사항)</u><br>으로 기재</td></tr>
</table>

| | |
|---|---|
| 입찰내용 |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총괄(PM)은 공공기관 관련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응용프로그램 운영인력 중 최소 3명 이상은 공공기관 개발 또는 유지관리 프로젝트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 |
| 업무협의 |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총괄(PM)은 "가급적" 공공기관 관련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응용프로그램 운영인력 중 최소 3명 이상은 "가급적"공공기관 개발 또는 유지관리 프로젝트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br>추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가급적" 문구 삽입 |

| | |
|---|---|
| 입찰내용 | ○사업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인력이어야 함.<br>- ~~사업책임자(PM)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포털사이트 구축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함~~<br>- 사업책임자(PM)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업무협의 |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입찰경쟁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좌측 취소선 문구 삭제하거나 아래와 같이 정정 요청<br>→**가급적** 사업책임자(PM)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포털사이트 구축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함. **요구사항 미충족은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되, 추후 협상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 | |
|---|---|
| 입찰내용 | 0.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3.0점) [별지 제6호 서식]<br>0. 소프트웨어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2.0점) [별지 제6호 서식] |
| 업무협의 | 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도시계획분야 인력 보유 평가는 과도한 기준으로 판담됨 |

**○ 요구 인력의 경력 및 기술등급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적정한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table>
<tr><td>입찰내용</td><td>기술인력 보유평가(합산점수)
<table>
<tr><th>평가분야</th><th>평가항목</th><th>부분별 평가항목</th><th>배점</th><th>비고</th></tr>
<tr><td rowspan="3">기술인력<br>보유</td><td rowspan="3">기술보유 인력<br>1인당<br>자격증별 점수부여</td><td>산업기사</td><td>0.3</td><td rowspan="3">최대 3점<br>최저 0.9점</td></tr>
<tr><td>기사</td><td>0.5</td></tr>
<tr><td>기술사</td><td>0.8</td></tr>
</table></td></tr>
<tr><td>등록의견</td><td>안녕하세요 본 사업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규격관련의견을 드립니다.<br>콘텐츠 개발은 교육공학적 요소 및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많은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콘텐츠 개발 관련 분야 중 자격증이 없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 기술인력보유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본 콘텐츠 개발 업체로써는 사업 참여 제약 사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제약사항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td></tr>
<tr><td>답변</td><td>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분료 기준표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평가로 수정하였습니다.</td></tr>
</table>

<table>
<tr><td>입찰내용</td><td>① 자격 및 등급 배점 기준<br><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 colspan="4">평가방법</th><th>비 고</th></tr>
<tr><td rowspan="3">참여</td><td rowspan="3">등급 및 인원</td><td rowspan="3">6.0</td><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d rowspan="3">발주기관 평가</td></tr>
<tr><td>1.0</td><td>0.8</td><td>0.6</td><td>0.4</td></tr>
<tr><td colspan="4">○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br>※ 최저배점 4.2점 / 최고배점 6점</td></tr>
</table>
※ 대상 기술 분야 : 산업디자인(전시관련분야), 실물모형제작</td></tr>
<tr><td>등록의견</td><td>기술인력보유상태 점수가 공고금액 대비 과도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br>조건완화를 통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첨부한 조달청공고 첨부문서와 같이 조정 부탁드립니다.<br>- 첨부 공고문(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전시, 체험콘텐츠 설계 및 제작 설치 )<br><table>
<tr><td>구 분</td><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r>
<tr><td>점 수</td><td>2.0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r>
</table></td></tr>
<tr><td>답변</td><td>- 본 사업 대상은 사적 제13호이자 세계유산인 송산리고분군 내에 위치하는 모형전시관으로, 특히 고분 내부 보존 환경을 위해 공개 제한된 무령왕릉 등에 대한 관람 요구에 따라 설치된 만큼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과 주변의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br>- 기술인력보유상태 점수 기준은 이러한 유적이 가진 상징성과 위상에 상응하여 정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제시하신 조건과는 차이가 있으나 사전 공개된 제안요청서 조건보다는 완화된 아래의 조건으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br><기존><br><table>
<tr><td>구 분</td><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r>
<tr><td>점 수</td><td>1.0점</td><td>0.8점</td><td>0.6점</td><td>0.4점</td></tr>
</table><br><조정><br><table>
<tr><td>구 분</td><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r>
<tr><td>점 수</td><td>1.5점</td><td>1.3점</td><td>1.1점</td><td>0.9점</td></tr>
</table></td></tr>
</table>

| | |
|---|---|
| 입찰내용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참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통신·정보처리분야의 특급 기술자 이상 이어야 한다. |
| 등록의견 | ** 지진계측시스템 책임기술자 요건 **<br><br>1. 일반적으로 지진계측시스템의 입찰조건은 대상구조물에 따라 토질 및 지질, 구조분야로 나뉘며 그에 따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평가되는데, 본 입찰에서는 부수적인 요소인 정보통신 공사업의 특급기술자 조 |

| | |
|---|---|
| | 건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br><br>2. 타기관 발주사례를 보면 토목의 토질 및 지질, 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자 경력으로 평가함. |
| 답변 | 1.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으로 적용하였고, 향후 시추조사 및 시추공설치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설치와 병행하여 토질 지질분의 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br><br>2. 저수지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진가속도계 설치실적뿐만 아니라 댐, 저수지등의 계측기설치등 유사실적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 | |
|---|---|
| 입찰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총괄은 해당 법인의 상근인원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 10년 이상 전문성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유사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실태점검 수행 경험 및 이에 준하는 능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 등록의견 | 1) 개인정보영향평가사(PIA) 자격의 시행은 2012년도 입니다.<br>따라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br>2)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이 2014년도부터입니다.<br>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유사실적 10년 보다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만 3년 이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br><br>PM의 자격요건을 유사실적 10년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 3년으로 건의 드립니다. |
| 답변 | 수용 |

**○ 요구 인력수가 사업규모 대비 적정한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1) 기술인력 보유상태 (6.0)<br>- 회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4대보험 확인서 및 측량및지형공간정보자격증)에 의해 평가한다.<br>- 산출식 = {A사 환산점수 × A사 지분율) + (B사 환산점수 × B사 지분율)…}에 대한 평점<br>- 기술자격별 계수적용(1인이 중복으로 기술자격 소지 시 상위자격만 인정 |

| 기술자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 계 수 | 3 | 2 | 1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보유상태(4.0점)

<table>
<tr><td></td><td>
<table>
<tr><td>계수평점</td><td>30점이상</td><td>25점이상</td><td>20점이상</td><td>20점미만</td></tr>
<tr><td>평 점</td><td>4.0</td><td>3.6</td><td>3.2</td><td>2.8</td></tr>
</table>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산업기사 보유상태(2.0점)
<table>
<tr><td>계수평점</td><td>30점이상</td><td>25점이상</td><td>20점이상</td><td>20점미만</td></tr>
<tr><td>평 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r>
</table>
</td></tr>
<tr><td>등록의견</td><td>
1) 기술인력 보유상태 (6.0)<br>
- 삭제<br>
- 회사 총 기술자 보유인원으로 평가<br>
- 산출식=(A사보유인원XA사지분율)+(B사보유인원XB사지분율)
<table>
<tr><td>구 분</td><td>50명이상</td><td>40명이상</td><td>30명이상</td><td>30명미만</td></tr>
<tr><td>평 점</td><td>6.0</td><td>5.4</td><td>4.8</td><td>4.2</td></tr>
</table>
2) 근거<br>
1. 현 공고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들의 기술자가 여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규격안으로 발주시 특정대형 기업만이 참여가 가능한 상황임 또한 GIS DB구축 사업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온 사업이므로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br>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차치부 예규 제39호, 2016.01.19]_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별표1 주5)기술인력평가 다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br>
3.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 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하고 업체들 간의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합니다
</td></tr>
<tr><td>답변</td><td>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준완화에 관한 답변<br>
-입찰 참가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사 보유상태로 한정 기술사보유인력 기준완화(10명 ⇒ 7명) 예정<br>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사 중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실적평가
</td></tr>
</table>

<table>
<tr><td>입찰내용</td><td>
<table>
<tr><td rowspan="3">외국어 가능 인력<br>총 인원수</td><td rowspan="3">중국어(신HSK 6급 또는 중국인)<br>일본어(JLPT 1급 또는 일본인)<br>영어(영어권 외국인만 해당, 동남아 제외)</td><td>총 9명 이상</td></tr>
<tr><td>총 6명 이상</td></tr>
<tr><td>총 3명 이상</td></tr>
</table>
</td></tr>
<tr><td>등록의견</td><td>제안서 평가기준 정량 평가부분(제안요청서 11페이지)의 외국어 가능 인력 총 인원수 배점에 본 사업의 과업량과 사업비 대비 너무 많은 인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br>이에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인원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비 대비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의견을 개진합니다.</td></tr>
<tr><td>답변</td><td>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어 가능 인력 총 인원수에 대한 심사항목을 삭제하고, 참여기술인력 심사항목인 마케팅 능력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td></tr>
</table>

## 9. 특정규격 요구

**○ 특정제품에 국한되는 기능이지 않은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물품규격서 > 소동물 내시경 시스템 :<br>-원산지 : Germany<br>-B.규격 > 수의과학 검역원에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허가)받은 제품으로 표준부속품 내역에 있는 품목과 동일하게 구성 되어야 한다.<br>-B.규격 > 3,4번 내용<br>○ 물품규격서 > 초음파영상진단시스템 :<br>-원산지 : U.S.A |
| 업무협의 | ▶ 특정규격 여부 확인 요청<br>▶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시 입찰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특정규격(조달우수제품, 특허, 실용신안,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은 금지사항에 해당합니다.<br>▶ 따라서 규격서 및 내역서 상에 명시된 규격의 특정규격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규격에 해당할 경우 공통(일반)규격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 제원**<br>- 중 량 : 610g이하(±3%) (헬멧 및 턱끈, 헬멧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부수물품 포함 무게)<br>- 조절범위 : 머리둘레 54~62 cm, 머리높이 ±1cm (중심위치로부터)<br>- 재 질 :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수지<br>- 색 상 : 검정색<br>**◆ 인증**<br>- EN397 , EN12492 |
| 등록의견 | 사전규격의 물품은 특정회사 특정모델 입니다<br>일반경쟁 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정한 입찰에 소지가 있으며 인증도 국내인증을 무시하고 유럽인증을 요구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공기관에 실수입니다<br>동등이나 유사물품 복수경쟁에 방법으로 투명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 개인안전장비(안전헬멧) 구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 지급하는 장비입니다.<br>· 본 장비 구매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홈 페이지에 공고 다수의 공급 업체가 참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br>· 헬멧 납품시 유럽연합통합안전인증(CE)중 EN397(산업용), EN12492(산악용) 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 중 한 가지 이상에 요건을 충족한 대상으로 납품 |

○ 특정업체의 규격을 연상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2. 3D 모델링 툴(AUTO CAD2017 ADDIN) |
| 등록의견 | (1차 의견) AUTOCAD 특정 모델에 대한 의견<br>(2차 의견) AUTOCAD는 가장 표준 CAD프로그램이므로 해당 CAD에서 활용하면 기 갖고 있는 설계 데이터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br>- AUTOCAD가 표준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지요? 나라장터 그 어떤 입찰에서도 특정 제품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제품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1차 답변)** AUTOCAD는 가장 표준 CAD프로그램이므로 해당 CAD에서 활용하면 기 갖고 있는 설계 데이터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br>**(2차 답변)** 의견 주신 부분을 수렴하여 규격서 및 제안서 부분에서 AUTOCAD 2017 ADD-In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입찰내용 | 1) 엔진부<br>- 엔진출력 : 165hp(121kW) 또는 동급 이상<br>- 타입/실린더수/냉각/흡인/팬조절장치 : SCR엔진/6기통/ 수냉식/ 터보차저/ 인터쿨러<br>- 분사방식 : 커먼레일 엔진 또는 동급 이상<br>- 연료탱크 : 400 ℓ 이상<br>- 최대토크 : 725 N.m 이상<br>- PTO 최대출력 : 106 kW 이상 |
| 등록의견 | 해당 규격서가 특정업체 및 특정규격(제조사 : 펜트)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이 불가합니다.<br>해당 마력수와 동등사양 이상 규격의 타제조사(존디어, 뉴홀랜드, 구보다 등등) 제품도 입찰 참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 답변 | 해당 트랙터는 한우연구소 소관 산간지 및 구릉지(험지)에 위치한 조사료 포장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일부 고사양의 기능(예 : 에어식브레이크)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br>아울러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동 규격서 이상의 제품은 어떠한 제조사의 물품도 납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Ⅱ. 장비의 구성<br>1. NucleoCounter NC system 3 set<br>2. Data processing system 3 set<br>3. IQ/OQ validation (optional) 3 set<br>- IQ/OQ documentation report<br>4. CFR 21 part 11 (optional) 3 set<br>5. Data analysis software 3 set |
| 업무협의 | 장비구성 사항 중 NucleoCounter NC System 명칭이 특정업체 모델명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요청 |

○ 표준(공통)규격으로 작성되었는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
|---|---|---|---|---|
| 입찰내용 | 구 분 | 명칭 | 주요기능 및 제원 | |
| | 본 체 | 다목적트랙터<br>(농업용트랙터) | 기능 | 여러 장착물을 탈부착하여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다목적 트랙터 |
| | | | 규격 | L207cm × W123cm × H172cm이상 |
| | | | 주행속도 | 전진 15km/h, 후진 12km/h 이상 |
| | | | 최대등판각도 | 지속 30도 이상 |
| | | | 엔진 | 3,600rpm, 30hp 이상<br>가솔린 수냉식 엔진 |
| | | | 주행방식 | 항시 4륜 구동 방식 (AWD) |
| | | | 프레임 | 허리굴절형 프레임 |
| | | | 무게 | 700kg 이상 |
| 등록의견 | 본 입찰건의 규격서 사양은 특정업체 외 물품 납품이 불가하여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므로 다목적트랙터가 현 한국시장에 여러 업체가 있으므로 타업체도 입찰이 가능한 공동규격사양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 | | |
| 답변 | ○ 우리 군이 구입 추진중인 영월공설운동장 관리장비는 본체와 부속장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호환되어 하나로 결합하여 특정 기능(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필요한 기능(작업)에 따라 본체와 호환되는 부속장착물만 따로 구입하여 운용할 수 있어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br>○ 또한, 공설운동장의 입지여건(학교부지 위치)과 경기장용 천연잔디의 관리, 겨울철 제설작업 등 각종 작업 시 안전성, 효율성, 작업성능, | | | |

| | |
|---|---|
| | 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사양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규격서 이상의 사양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이에, 2017년 기준 최소 7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한 사례를 참고하여 본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입찰내용 | <table><tr><th colspan="2">항 목</th><th>제 원</th></tr><tr><td colspan="2">크기(가로×세로×두께, ㎜)</td><td>90 × 75 × 40 이하</td></tr><tr><td colspan="2">중량(g)</td><td>155 이하</td></tr><tr><td colspan="2">측정 방사선</td><td>감마선(γ)</td></tr><tr><td rowspan="2">선량 측정범위</td><td>최저(μSv/h)</td><td>1 이하</td></tr><tr><td>최고(Sv/h)</td><td>9.99 이상</td></tr><tr><td rowspan="2">선율 측정범위</td><td>최저(μSv/h)</td><td>0.01 이하</td></tr><tr><td>최고(Sv/h)</td><td>2 이상</td></tr><tr><td colspan="2">선량과 선율 정확도(%)</td><td>±15 이내</td></tr><tr><td colspan="2">방수/방진 등급</td><td>IP55 이상</td></tr><tr><td colspan="2">배터리 종류(전압)</td><td>AA 건전지(전압 업체사양)</td></tr></table> |
| 등록의견 | 본 규격은 T사의 규격으로 지나치게 맞춰져 있기에 동등규격의 타사제품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일반경쟁을 방해하는 디테일한 요소가 많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자격요건이나 핵심필요기술이외의 불필요한 규격요건은 삭제하여 공통규격으로 조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답변 | 1. 핵심필요 기술이외의 불필요한 규격요건은 삭제<br>① 군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의 성능 및 제원은 합참으로 부터 요구받아 조달연구원에 성능 및 제원에 맞는 장비를 시장조사 의뢰한 결과 2개 이상 업체의 장비모델이 군 요구사항에 충족된다는 결과를 받음<br>② 이러한 시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품원에서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였고 합참에서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 후 조달 요청함<br>* 따라서 본 장비획득을 위한 구매요구서는 합참에서 군 임무수행을 고려한 요구성능 선정 전문기관인 조달연구원과 기품원의 시장조사 및 구매요구서 작성 합참의 최종확인 등을 통해 일반경쟁을 위한 특정장비 사양 등 불필요한 규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정/수정 하였음 |

## 10. 공동수급 구성원 수 제한

○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1.2 적용 규정<br>가. 우리원 계약운영요령<br>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 불허) |
| 업무협의 | ▶ 조달청 입찰공고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밑줄 삭제바람<br>▶ 공동수급 불허 사유 기재바람 |

| | |
|---|---|
| 입찰내용 | <페이지2><br>□ 참가자격<br>◦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가 |
| 업무협의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및 구성조건 명시 바랍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을 허용해야 하며, 불허 시 제안요청서상에 사유를 명시)<br>- 공동계약 허용시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1.과업지시서_황해 해파리 모니터링 중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항목상 가.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 등록의견 | 본 과업의 내용에는 단기간 내에 4개 이상 다수의 항로에서 기회선박을 이용한 해파리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br>국제노선을 이용하게 되는 본 연구용역의 특성 상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회선박을 이용한 해파리 육안조사를 수행해본 경험을 가진 다수의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br>따라서 해파리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간 공동수급을 통해 가능한 많은 해파리 연구 인력이 본 과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답변 | 공동수급 허용하여 공고예정입니다. |

| | |
|---|---|
| 입찰내용 | 입찰응모자격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중 1개 이상/ 단독(공동계약 불가) |
| 등록의견 | 본 과업의 내용에는 단기간 내에 4개 이상 다수의 항로에서 기회선박을 이용한 해파리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 조경, 도시 등 전문분야와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학술연구 등)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 |

| | |
|---|---|
| |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건의<br>과업내용상 활성화계획 수립 외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전담인력 파견(2인), 공동체 활성화방안 마련 및 지원이 중요한 과업요소 중 하나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분야 협업체계 구축필요 |
| 답변 | 의견 중 공동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후 추후 반영여부를 결정 |

| | |
|---|---|
| 입찰내용 |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 등록의견 |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은 실질적으로 공기충전기 납품업체가 주도하여 입찰함으로 본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은 타시도 소방본부(강원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입찰 시행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방법으로 입찰해야 많은 업체들이 공정하게 입찰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답변 | 주성인터내셔널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 |

○ **공동수급 업체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br>공동이행방식 가능(2개 업체 이내)<br>시스템의 유기적 연계(연동)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불가 |
| 업무협의 |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재검토<br>-「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br>**＊ 구성원수 :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경우 해당 사유 명시**<br><br>예시)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
|---|---|
| 입찰내용 | 0.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로 구성 (3개사 이내, 최소 참여 비율 10%이상) |
| 업무협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5인 이하 10%이상으로 구성 권고 |

| | |
|---|---|
| 입찰내용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관사업자의 수행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
| 업무협의 |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수 재검토<br>-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br>→ 작성 예시)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
|---|---|
| 입찰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업무협의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 재검토<br>- 구성원수 :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경우 해당 사유 명시 요청<br>※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br>**→ 작성 예시)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으로 하여야 함** |

**○ 기타(주사업자 참여비율)**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br>※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br>※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br>※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사업자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0% 이상(70%이하) 이어야 합니다. |
| 등록의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구성)를 보면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를 권고하고, 특별한 사항이 인정될 경우에만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4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해당 지역업체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당 사업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당 사업에 참여하여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기술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간의 공동 수급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으로 당 사업의 주사업자 |

| | |
|---|---|
| | 참여 최소지분을 50%이상으로 제한을 한다면,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합니다.<br>또한 당 사업과 유사한 대형시스템통합사업에 사례를 찾아보아도 주사업자의 최소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를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주사업차 참여지분 제한을 완화 혹은 삭제를 제언드립니다. |
| 답변 | ○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주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사업자는 본사업뿐만 아니라 H/W·S/W별로 분리발주되는 연관사업 지원 및 시스템 통합 등 전체 사업에 대한 전담사업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br>○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약 2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업으로 고도화된 시스템 통합능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br>○ 주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추진과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조정능력 확보 등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50%이상의 최소지분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하지만, 언급하신 '기재부 계약예규' 규정과 동 제안요청 내용이 일부 충돌함에 따라 최소지분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완화토록 하겠습니다.<br>○ 주사업자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0%이상(70%이하)으로 참여를 **권고**합니다. |

## 11. 경쟁제한적 입찰방법

**○ 사업내용에 비추어 입찰방식이 적정한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규격가격동시입찰로 입찰요청 |
| 업무협의 | ▶ 규격가격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나 현 요청 건은 규격이 비교적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사유도 미비하며, 납품가능한 업체가 다수 있는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법 변경 검토 |

## 12. 부적정한 제안평가기준

**○ 평가항목이 적정한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정량평가<br>- 실적평가<br>: 단일용역 건당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함 |
| 업무협의 | •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4]에 따름<br>① 단일용역 건당 평가가 아님 → 관련 실적의 누계에 대한 평가임<br>② 유사용역 평가 아님 → 동등 이상 용역의 평가임 |

| | |
|---|---|
| 입찰내용 | ○ 정량평가<br>- 신인도<br>만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여업정지 처분 등 제제를 받지 않은 업체)<br>2.8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여업정지 처분 등 제제를 받거나,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br>주석 : 부정당 제재 위반여부 확인 |
| 업무협의 |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처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처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br><br>• 부정당제재 유무만 평가할 것인지, 부정당제재 유무,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영업정지 처분 유무만 평가를 할 것인지 기타 타 상황까지도 평가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br><br>• (부정당제재 유무 이외까지 평가를 할 경우) '~ 등'의 표현은 불확정 개념이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의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수정 요청 |

| | |
|---|---|
| 입찰내용 |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br>2. 수행실적(3점)<br>3. 경영상태(3점)<br>~~4. 기술개발실적(4점)~~<br>~~5. 신인도 :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비율(4점)~~ |
| 업무협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2> 주)2.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 |

| | |
|---|---|
| | **(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에 따라 **과도한 평가기준이 아닌지 재검토 및** 평가항목 삭제 권고<br>**-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항4호의 정량평가 항목 참조 바라며, 해당 평가항목 외에는 진행 불가능합니다.**<br>**-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기술개발실적, 신인도의 경우 다수의 업체에서 과도한 평가기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경쟁입찰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은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쪽이 아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평가배점이 적정한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table>
<tr><td>입찰내용</td><td>마. 신인도<br>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로 평가<br>(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한 합산하며, 참여업체 모두 평가)<br><br>
<table>
<tr><td>구 분</td><td>6개월 이상</td><td>6개월 미만<br>3개월 이상</td><td>3개월 미만</td><td>없음</td></tr>
<tr><td>점 수</td><td>-10</td><td>-8</td><td>-5</td><td>10</td></tr>
</table>
</td></tr>
<tr><td>등록의견</td><td>신인도 격차가 20점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br>곧 실적이나 보유 인력에 비해 점수 편차가 커서 정량적 평가에서 중요도가 신인도에 있는 것 같아 점수 조절이 필요합니다.<br>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 합니다.<br>
<table>
<tr><td>구 분</td><td>6개월 이상</td><td>6개월 미만<br>3개월 이상</td><td>3개월 미만</td><td>없음</td></tr>
<tr><td>점 수</td><td>-5</td><td>-3</td><td>-2</td><td>10</td></tr>
</table>
</td></tr>
<tr><td>답변</td><td>신인도 평가기준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한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경우 감점10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감점3점, 3개월 미만일 경우 감점 2점을 점수편차를 조정<br>귀 사의 의견대로 신인도 격차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br>신인도평가기준은 협상적격자 선정에 상대평가가 아닌 1차 평가시(70점 이상 통과)에 적용되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br>특정 업체에 유불리하게 작용가능한 배점한도 조정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td></tr>
</table>

| | |
|---|---|
| 입찰내용 | □ 평가방법<br>○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br>-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br>-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br>○ 기술평가 방법<br>- 공정·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에 기술평가를 위탁하여 실시<br>- 기술평가는 정성(80점)과 정량(10점)으로 나누어 총 90점으로 평가<br>-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평가기준(56p)」에 의함<br>-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 등록의견 | 제안요청서상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br>현재 평가기준은 사업이해도, 기능요구사항에 배점이 집중되어 있어 결국 기존사업자(dBrain, e나라재산)가 거의 100% 수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br>타 공공기관 또한 업무를 많이 아는 사업자가 수주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공정성과 객관적 평가에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SI 업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배점기준을 만듭니다. 첨부파일에 보듯이 사업규모가 더 크고,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사업 또한 배점이 공정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본 사업은 일부 기존업무 개선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규구축 업무로써 기존(dBrain, e나라재산) 사업수행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이해 및 기능요구 분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br>다만, 귀사의 우려에 대해 검토결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편차 완화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하겠습니다.<br>* 수용 : 배점편차 완화 |

<table>
<tr><td>입찰내용</td><td>○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br><table>
<tr><th>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th><th>평가 점수</th></tr>
<tr><td>AAA</td><td>-</td><td>AAA</td><td rowspan="7">6</td></tr>
<tr><td>AA+, AA0, AA-</td><td>A1</td><td>AA+, AA0, AA-</td></tr>
<tr><td>A+</td><td>A2+</td><td>A+</td></tr>
<tr><td>A0</td><td>A20</td><td>A0</td></tr>
<tr><td>A-</td><td>A2-</td><td>A-</td></tr>
<tr><td>BBB+</td><td>A3+</td><td>BBB+</td></tr>
<tr><td>BBB0</td><td>A30</td><td>BBB0</td></tr>
</table>
<table>
<tr><td>BBB-</td><td>A3-</td><td>BBB-</td><td rowspan="2">5</td></tr>
<tr><td>BB+, BB0</td><td>B+</td><td>BB+, BB0</td></tr>
<tr><td>BB-</td><td>B0</td><td>BB-</td><td rowspan="2">4</td></tr>
<tr><td>B+, B0, B-</td><td>B-</td><td>B+, B0, B-</td></tr>
<tr><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d>3</td></tr>
</table>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br>-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td></tr>
<tr><td>등록의견</td><td>정부에서는 창업-소기업의 조달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 입찰 참여시 불합리한 평가기준이나 과도한 실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 진입규제 개선을 해왔습니다.<br>제안요청서 13페이지의 경영상태 평가의 배점 간격은 규모가 큰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세부 배점의 완화를 요청드립니다.<br>첨부하는 유사 입찰 공고의 관련 배점을 참고하시어, 적정규모의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td></tr>
<tr><td>답변</td><td>1.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대행용역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2. 우리시에서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다수의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나,<br>3.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기준 또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져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td></tr>
</table>

## 13. 부적정한 평가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식이 적정한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라.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br>o 제안평가 방식 : 현실공간(off-line)에서 진행 |
| 등록의견 |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br>제10조(평가방법) ①제안서는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br>상기 기준을 보면 10억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 평가를 우선 검토(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평가도 가능)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온라인평가 방안을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br>중요 이유로는 오프라인 평가 준비에 따른 소요비용도 많고, 새로운 영역의 업무에 도전(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중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br>본 사업은 통계서비스에 대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기술력, 추진방향 등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리자의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오프라인 제안서 기술평가를 진행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br>우리 청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
|---|---|
| 입찰내용 | ○ 기술평가 방법<br>-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br>-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용함<br>-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br>-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기술평가 100% 기준)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등록의견 | 본 입찰은 장기계약 사업임을 감안하여 해당 수원국과의 일정조율을 통해 일반 일반입찰공고 진행과 수요기관의 자체평가방식을 조달평가로 변경하여 다수의 업체의 입찰참여 유도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요청 |
| 답변 | **(검토 결과) 불수용**<br>**(이유)**<br>·본 사업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올해 4월 초에 수원국(시에라리온 및 라이베리아) 및 세계은행과 |

| | |
|---|---|
| | 사업모델 확립·실시설계 등을 위한 현지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수원국 및 국제기구와 일정 변경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경우 사업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또한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할 조업감시시스템은 해외에 수출되는 첫 사례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물론 국내・외 수산관련법, 수산정책 및 수산 관련 국제법 전문가, 해외 수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의 평가를 통해 최상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br>・따라서 본 사업은 긴급입찰과 제안서 자체평가를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 | |
|---|---|
| 입찰내용 | **2) 기술평가 방법**<br>○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교에서 자체 평가로 진행<br>○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한다.<br>○ 정성적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등록의견 | 조달청에서는 제안서평가 입찰 진행시 특정업체를 담합 행위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평가 및 심사위원풀을 운영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br>그런데 이런 공정한 시스템을 배제하고 자체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br>자체 평가 수행시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지요?<br>평가이후 입찰결과 발표 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낙찰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매우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보일 것입니다.<br>또한 수요기관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조달청 시스템을 통한 평가방식이 유리하다 여겨집니다. |
| 답변 | **의견 수용 여부 : 불수용**<br>-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br>- 순천대학교 정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은 학내 모든 전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통합학사시스템,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 등)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기술성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 따라 보다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br>아울러 평가위원 선정 시 외부기관의 본 용역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추천받아 선정하여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 14. 부적정한 실적인정범위

**○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table>
<tr><td>입찰내용</td><td>2) 유사용역 실적 : 연약지반 침하안정관리 용역, 연약지반을 포함한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또는 실시설계), 연약지반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br>▷ 실적 인정비율
<table>
<tr><th>구분</th><th>연약지반 침하안정관리</th><th>연약지반 설계 및 감리</th></tr>
<tr><td>인정비율</td><td>100%</td><td>60%</td></tr>
</table>
</td></tr>
<tr><td>등록의견</td><td>연약지반 침하안정관리는 조사,시험,설계,시공,계측분야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조사,시험,계측분야에 경험이 없는 설계.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실적 인정시 공사기간 중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br>계측과 상관없는 설계, 건설사업관리자 경력인정보다는 타 계측분야에 경력을 인정하여 많은 계측업체에 입찰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판단됨.<br>요청사항 : 연약지반 설계 및 감리 0%, 타 분야 계측 60~80%</td></tr>
<tr><td>답변</td><td>해당용역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평가기준(범위)은 전남개발공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의 평가기준 등을 근거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td></tr>
</table>

<table>
<tr><td>입찰내용</td><td>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기준<br>(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준공일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지분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개선)사업, 재해예방사업(하천 및 소하천 분야 포함), 상습침수지(수해상습지, 피해복구, 하천 및 소하천 분야 포함, 재해분야가 아닌 하천설계는 제외)정비 (개선)사업, 우수저류시설(저류지) 설치사업,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실적만을 인정하며,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td></tr>
<tr><td>등록의견</td><td>하천(환경)정비, 하천치수, 하천개수사업의 주목적이 이수 및 치수이며,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 시설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재해분야가 아닌 하천 설계는 제외”를 라는 규정은 너무 과도하고 애매한 제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인정범위에 하천(환경)정비, 하천치수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td></tr>
</table>

| | |
|---|---|
| 답변 | ○ 본 PQ용역 구매구격을 사전공개함에 앞서 관련법령에 따른 선행절차로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br>○ 귀하께서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도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검토 의견 등에 따라 최종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실적인정 범위에“재해분야가 아닌 하천설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조건부 채택)된 사항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입찰내용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br>(1) 사업수행능력 평가시에는 유사용역 인정 대상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로 규정한 기관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중 **최근 5년내**(공고일기준)에 전체 준공한 **용역비 1억원이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풍수해부문 비상대처계획(EAP) 및 우수유출저감계획** 용역에 한하여(공동도급시 회사지분금액) 평가함(용역명에 기재된 실적에 한함) |
| 등록의견 | 고시된 유사용역 및 참여기술자 실적인정범위를 보면 풍수해저감계획이나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평가계획 등 지나친 실적인정범위를 축소하여 특정업체 몇 곳 외에는 참여조차 어려운 과도한기준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사업과동일한 사업을 발주한 타지자체 평가기준을 보더라도 하천관련 설계용역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실적도 인정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지만 지나치게 기준을 강화하여 참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적인정범위(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확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하천분야,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및 배수펌프장까지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 |

**○ 민간실적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 교육기관 실적만 인정 |
| 업무협의 | - 특정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 배제는 불가.<br>민간실적까지 모두 인정하도록 수정 |

## 15. 학력사항 표기

**○ 수행인력의 학력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별지서식6,7,18] 학력사항 표기 |
| 업무협의 | ○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이 학력 철폐에 역주행하면서, 관행적으로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불필요한 학력기재 요구사항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시행<br>* 과업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학력사항인 경우 사유서를 송부하여 주시고, 이외의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 통합발주

**○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입찰인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요구 |
| 업무협의 | -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건의 경우 분리발주가 원칙이오니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br>- 분리발주가 불가할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일괄발주 5개 항목 검토 및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이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제출<br>(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공고에 사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반영하고 사후 정산처리 됨)<br>- 만약, 본 건이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물품설치 건이면 일괄발주가 가능하오니 관련 공사법령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

**○ 관련 법령이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가**

**<구매업무 협의>**

| | |
|---|---|
| 입찰내용 | |
| 업무협의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01.16.)」 'Ⅱ.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발주 검토하여 주시고, 분리발주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비싼 경우 등 통합발주가 부득이한 경우는 통합발주 사유서를 첨부 |

○ 기타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 | |
|---|---|
| 입찰내용 | ◦ 쓰기방지장치 : 5.25인치 베이 장착형<br>- PCIe/IDE/SATA/SAS/FireWire/USB3.0 이상 하드디스크 통합 쓰기방지 지원<br>- USB 방식 저장장치 쓰기방지 지원<br>- Host 연결방식 : USB 3.0 이상<br>- 전원공급 포트 및 전원 스위치 장착<br>◦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제조사의 완제품 |
| 등록의견 | 해당 “쓰기방지장치”는 어떠한 워크스테이션 제조사에서도 완제품으로 함께 제공하지 않는 별도의 물품이기에<br>“쓰기방지장치”는 따로 68식에 대한 규격 항목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br>또한, 해당 “쓰기방지장치”는 포렌식 장비로 특정업체가 독점적 공급권한을 보유한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이 불가한 물품입니다.<br>따라서, 일반 경쟁 입찰에 해당하는 워크스테이션 품목 요구사항에 해당 물품을 결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워크스테션 제조/유통사 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 답변 |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기방지장치는 수집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쓰기방지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워크스테이션의 단독 사용은 사이버수사에 있어 무의미합니다.<br>이렇듯 쓰기방지장치는 워크스테이션 규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분리발주는 불가합니다.<br>다만 쓰기방지장치 공급 업체와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체결하여 워크스테이션 제조사가 경쟁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